

제422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2월18일(화)

장 소 국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5)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8)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6)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4)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1)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5)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3)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7)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8)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9)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0)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3)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4)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5)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4)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5)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7)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7)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9)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0)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4)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5)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7)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4)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7)
-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9)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2)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3)

2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3)
3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0)
3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7)
3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0)
3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3)
3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9)
3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5)
3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7)
3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5)
3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9)
3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1)
4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6)
4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3)
4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4)
4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2)
4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9)
4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5)
4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8)
4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9)
4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5)
4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1)
5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4)
5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7)
5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3)
5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0)
5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4)
5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4)
5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8)
5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0)
5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3)
5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3)
6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0)
6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1)
62.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9)
63.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7)
64.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3)
6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0)

66.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0)
6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3)
68.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7)
6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71)
70.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5)
7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6)
7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3)
7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4)
7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1)
7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0)
7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7)
7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8)
7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4)
79.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2)
8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795)
8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6)
8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5)
8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1)
8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7)
8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4)
8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4)
8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7)
8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7)
89.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1)
90.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1)
9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6)
9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3)

9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7)
  9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1)
  95.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4)
- 

### 상정된 안건

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5)	7
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8)	7
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6)	7
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4)	7
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1)	7
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5)	7
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3)	7
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7)	7
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8)	7
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9)	7
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0)	7
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3)	7
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4)	7
1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5)	7
1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4)	7
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5)	7
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7)	7
1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7)	7
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9)	7
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0)	7
2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4)	7
2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5)	7
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7)	7
2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4)	7
2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7)	7
26.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9)	8
2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2)	8
2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3)	8
2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3)	8
3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0)	8
3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7)	8

3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0)	8
3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3)	8
3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9)	8
3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5)	8
3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7)	8
3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5)	8
3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9)	8
3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1)	8
4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6)	8
4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3)	8
4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4)	8
4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2)	8
4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9)	8
4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5)	8
4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8)	8
4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9)	8
4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5)	8
4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1)	8
5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4)	8
5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7)	8
5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3)	8
5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0)	8
5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4)	8
5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4)	8
5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8)	8
5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0)	8
5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3)	8
5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3)	8
6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0)	8
6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1)	8
	.....
62.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9)	8
	.....
63.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7)	8
64.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3)	9
6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0)	9
66.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0)	9

6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3) .....	9
68.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7) .....	9
6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71) .....	9
70.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5) .....	9
7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6) .....	9
7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3) .....	9
7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4) .....	9
7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1) .....	9
7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0) .....	9
7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7) .....	9
7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8) .....	9
7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4) .....	9
79.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2) .....	9
8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795) .....	9
8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6) .....	9
8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5) .....	9
8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1) .....	9
8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7) .....	9
8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4) .....	9
8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4) .....	9
8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7) .....	9
8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7) .....	9
89.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1) .....	9
90.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1) .....	9
9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6) .....	9
9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3) .....	10
9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7) .....	10
9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1) .....	10
95.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4) .....	10

(10시05분 개의)

○소위원장 부승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일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5)
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8)
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6)
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4)
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1)
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5)
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3)
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7)
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8)
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9)
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0)
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3)
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4)
1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5)
1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4)
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5)
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7)
1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7)
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9)
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0)
2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4)
2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5)
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7)
2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4)
2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7)

26.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9)
2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2)
2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3)
2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3)
3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0)
3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7)
3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0)
3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3)
3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9)
3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5)
3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7)
3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5)
3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9)
3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1)
4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6)
4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3)
4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4)
4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2)
4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9)
4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5)
4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8)
4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9)
4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5)
4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1)
5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4)
5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7)
5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3)
5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0)
5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4)
5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4)
5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8)
5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0)
5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3)
5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3)
6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0)
6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1)
62.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9)
63.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7)

64.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3)
6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0)
66.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0)
6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3)
68.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7)
6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71)
70.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5)
7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6)
7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3)
7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4)
7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1)
7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0)
7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7)
7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8)
7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4)
79.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582)
8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795)
8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6)
8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5)
8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1)
8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7)
8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4)
8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4)
8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7)
8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7)
89.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391)
90.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1)
9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6)

9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3)
9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7)
9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1)
95.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4)

(10시)06분)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김병주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부승찬 이것 다 하시고 하시지요.

제95항까지 9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오늘 모처럼 법안소위가 열렸는데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안들도 많고요.

법안소위 할 때 국방부차관님이 늘 오셔서 같이 했는데 지금은 차관이 국방부장관직무 대행까지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법안소위에 차관님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또 직무 대행으로서 할 것도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뒤에 실장·국장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오늘 오셨으니까 한 시간 정도는 하시더라도 보내 드리고 국장·실장들이 앞에 나와서 오히려 전문적으로 답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무대행으로서 대단히 바쁘고 어저께도 여기 와서 또 잡혀 있고 지금 국방부는 누가 지휘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한번,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아마 동의할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오셨으니까 진행하고 이따가 진행 속도를 봐서 중간에 한번 정회하고 보내 드리는 게 어떨까 싶네요.

○박선원 위원 동의합니다.

○허영 위원 동의합니다.

○한기호 위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김병주 위원님께서 국방부의 어려운 점을 잘 이해하시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오신 분들이 법무관리관을 빼고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분야별로 자기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국방부 전체 의견을 얘기하기는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이…… 법무관리관님은 이 안을 전부 다 검토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분들은 자기 분야별로 했기 때문에 분야별로 따로따로 물어본다 그러면 이거 국방부 입장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병주 위원 그러면 오전만 하시지요. 하루종일 이렇게 잡아 놓기는, 급한 법안 제가

봤을 때 계엄법하고 몇 개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시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것은 이제 추후에 제가 논의를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한번 의논해서, 정회 시간에 국민의힘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의견 조율해서 하세요.

○**소위원장 부승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0항까지 60건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심사자료 1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0항까지 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등 59건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1건의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동 계엄법 개정안 60건에 대한 심사 진행은 각 개정안마다 계엄 진행 단계별로 계엄의 사전적·사후적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입법 취지의 개정 의견들을 담고 있어 개정안별 개별적인 심사가 제한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엄 진행 단계별로 개정안들이 제기한 주요 개정 사항들과 그 밖의 개정 사항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심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목차는 총괄적 검토, 주요 개정 사항들, 그 밖의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총괄적 검토가 되겠습니다.

안건 및 심사 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개정안들의 주요 개정 사항들입니다.

여기에는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동의 규정 등 신설 그리고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 동의 신설, 국회에 대한 계엄선포 통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계엄 선포의 무효 등 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적 국회 승인 신설 등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 계엄의 효력 상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기능 보장 및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 방해행위 금지 명시 그리고 계엄 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보장 및 체포·구금 금지 그리고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 회의 참석조치 신설 그리고 계엄 해제 이후 국회 주요보고 신설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총괄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주요 항목별 검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개정안들의 주요 사항인 사전동의권 신설 및 사후승인권 등에 대한 입법조사처 의견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엄 관련 해외 입법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검토를 마치고 먼저 주요 개정 사항들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적 통제로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계엄법에. 재적 국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는 안과 재적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동의하는 다수의 안건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엄 선포·변경 등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거나 국무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려는 다수의 의원안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통령이 계엄 선포·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외에 별도의 절차를 규정한 개정안들이 있는데요. 황희 의원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천하람 의원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동시에 그 사유서를 붙여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병주 위원** 몇 쪽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12페이지 되겠습니다.

헌법상의 ‘계엄과 그 해제’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에 대하여 헌법학적으로 국무회의 심의 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구속설과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지 의결기관이 아니므로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내용과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비구속설이 모두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은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들은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계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국무회의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 등을 거치도록 명시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행정부의 사전적이고 내부적인 민주적 통제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계엄과 그 해제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에 적용되는 특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개정안들과 같이 계엄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과 법률인 정부조직법 및 그 하위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전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 추가적으로 저희도 국무회의는 현재는 헌법기구에서도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으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기가 돼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것을 심의라는 용어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헌법적인 것에 대한 사전 검토가 선행이 되고 진행이 돼야 되지만 아마 이 계엄법에서 이걸 넣어도 구속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

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지금 대행님 말씀은 심의가 아니라 의결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사실상은 계엄법에 보면 심의를 거쳐서 또 다 부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서라고 하는 것은 국무회의 심의에 대해서 사실상은 거의 의결과 마찬가지인 그런 법적 효력을 위해서 선포하고 선포 시에는 부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대로 진행을 하되 계엄에 관한 사항이니까 계엄법에 규정하는 것이 좀 더 법적 명확성이 담보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계엄 시에 여러 가지 절차적 합법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계엄법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감사합니다.

혹시 직무대행님, 별도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심의하고 의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사실 국무회의에 있어서 심의 이것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을 구속하지 않는 것을 사실은 저희는 심의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대통령의 판단이나 결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어떤 것이 심의됐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심의의 의미로서 함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결은, 그것은 의결이 됐을 때는 어떤 최종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그것을 구속할 수 있다라는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두 문구들을, 심의·의결이라는 것을 같이 계엄법에 넣었을 때는 당연히 헌법에 명기돼 있는, 89조 5항에 있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라고 하는 군사 사항에 관련된 것들이 같이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아마 계엄법으로서 이게 실질적으로 효력 발휘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만약에 이게 정말 위원님들끼리 합의돼서 필요하다고 하면 헌법에 대한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좀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지금까지도 누누이 밝혔지만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은 실제로 우리 헌정사에 정말 충격적이고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대혼란을 초래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좀 더 결심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이고 또 가능한 한 대통령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한다라고 89조에 명시된 것에 의결하는 것까지도 넣으면 헌법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면에서 실제로 저는 여기 12쪽에 ‘참고로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계엄을 포함한 국가긴급권 발동의 사전적 통제가 미흡하여 국무회의가 유일한 사전적 통제장치이므로 향후에 헌법 개정 시에 사전적 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헌법학계의 논의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심의·의결을 한다라고 명시를 하면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될 텐데 헌법에 이렇게 명시해 놓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가 법률을 먼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헌법에 대한 개정 논의를 하고 있지만 헌법 개정 시까지는 현재의 헌법을 바꾸지 못한다면 법률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구속한다고 하기는 뭐하고 그걸 초월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한기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엄법 관련된 개정 소요가 60건 정도 나왔는데 죽 들여다보니까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상당히 좀 충돌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동의제 도입과 관련된 부분은 헌법 77조하고 충돌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의결 요건을 신설해야 된다라고 아까 한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89조에 위반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행법인 국회의원의 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또 44조하고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엄법의 개정은 어차피 87년도 헌법 자체에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고 개헌 요구들이 지금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과 연계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지금 사실 12·3 비상계엄, 저는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친위 쿠데타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긴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계엄법에 대해서 지난 8월부터 들여다봤어요. 그때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장관될 때부터 계엄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계엄법하고 헌법을 들여다봤을 때 허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독재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평시 계엄을 해서 친위 쿠데타가 가능할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법적 미비점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발의를 이미 했었던 건데 문제는 그래서 이번에 12·3 계엄 이후에 또 많은 의원님들이 60건이나 이렇게 입법을 발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엄법을 어떤 형태로든 좀 고쳐야 된다는 데 아마 전 우리 소위 위원님들은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헌법과 충돌되는 부분 때문이지요. 그래서 헌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통과된다 해도 사실은 법 발의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면 12·3 비상계엄 시기 또 시간이나 이런 것들 조건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거든요. 실제 논란이 많고 그래서 전시에는 그대로 해도 저는 전혀 무방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전시와 평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전쟁이라고 하면 명확히 전쟁 선포를 하잖아요. 그전에 평시에는 진짜로 계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무위원 이런 것도 국무회의가 평소는 아마 심의라 하더라도 과반 이상이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3분의 2로 한다든가 좀 더…… 하위법에서는 할 수 있지요, 심의를 그냥 그대로 넣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3분의 2 정도 해서 전체 인원들이 더 신중을 기한다든가 뒤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심의할 때도 계엄사령관 심의를 꼭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빠졌었거든요. 계엄사령관의 심의는 추천을 받아서 심의하는데 2배수로 올려서 심의해서 1명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제도적인 장치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법 테두리 내에서.

그래서 우리 입법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정부에서는 그런 대안을 내셔서 이번에 좀 더, 물론 나중에 헌법을 고치면 되는데 헌법 고치는 건 언제 고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헌법 테두리 내에서 신중을 기하는 방안을 정부 측 안도 제시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님도 그 안을 해 주면 여야가 그 정도 범위 내에서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헌법을 위배하는 것까지, 저는 사실 제일 좋은 건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으로 가시는 게 좀 어떨까 싶네요.

###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한기호 위원 지금 여기에 60건 이상 냈잖아요. 이걸 다 뮤어 놓고 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그런데 제가 봐서 여기서 일부를 우리가 계엄에 대해 좀 강화하기 위해서 특히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에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항목 항목, 여기 지금 법안 제안한 것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검토해 나가야지 뮤어 놓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 ○소위원장 부승찬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윤상현 위원님.

○윤상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사전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입법 미비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국무회의라는 것을 거쳐라 하는 건 국무회의 심의를 얘기하는데 심의는 결정에 속박되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단행했을 때도 당시 사전통고나 국무회의 심의가 없는데도 그게 합헌으로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에는 헌법 개정하고 같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하위 법률이 헌법상의 국무회의 심의를 저촉하거나 위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헌법 개정 논의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87년 헌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계엄법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이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바로 계엄법도 개정이 되면 좋겠지만 그래야 될 법률이 한두 개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계엄법을 개정을 하고 헌법으로의 반영은 사후에 하는 경우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개헌 때까지는 새로운 계엄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일종의 경과 규정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제한 기간을 설정을 하고 헌법에 침해되는 부분은 이후 헌법의 개헌을 통해서 반영하고 그 전까지는 새로운 계엄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개헌될 때 이것을 기본 원

칙으로 개헌에 반영하고 이것을……

○임종득 위원 법률을 가지고 헌법을 제한하겠다고요?

○박선원 위원 아니, 개헌되기 전까지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못 할 게 뭐 있어요?

○한기호 위원 아들이 아버지를 낳을 수는 없잖아.

○소위원장 부승찬 이게 지금 논의되는 게요,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지금 77조에 보면 계엄 선포 요건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

지금 계엄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잖아요, 비상계엄이니까 법률이 정한 선에서. 그러면 계엄과 관련돼서 국무회의 심의 자체를 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다만 강화할 수는 있겠지요. 의결이 아니라 심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들을 3분의 2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러니까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심의 의결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헌법 개정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계엄법 자체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헌법과 계엄법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비상사태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계엄법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헌법에는 그냥 명문적 조항만 넣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지금 계속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고 헌법 개정과 직결되는 문제だ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 77조가 명시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게 마냥 논의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국회의 사전동의 신설과 관련된 개정안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허영 위원 저도 좀 보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요? 심의와 관련된 거지요?

○허영 위원 예. 의결하는 것이 헌법적 충돌이 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하고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무회의가 계엄령 선포에 대한 유일한 사전적 통제 장치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이 사전적 통제라고 하는 그 권한과 기능들을 제대로 살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하든 간에 개헌 전까지는 국무회의의 심의권들을 좀 강화하고 사전적 통제의 의미들을 살릴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무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국무회의 자체의 권한을 여러 가지 정족수 문제라든지 그리고 부서나 이런 것들을 강제한다든지 회의록 같은 것들을 강제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계엄령 선포 과정 속에서 국무회의 외에 헌법적 기관들의 기관장들의 의견들을 듣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별도의 보완적 장치를 통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희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별도의 헌법기관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적 단계를 규정하는 개정안을 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종득 위원** 지금 방금 하신 말씀 논의를 좀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부승찬** 예.

○**임종득 위원** 지금 우리 헌법 구조들을 보면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으로 규정을 하고 체크 앤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엄 발의와 관련돼서, 비상계엄을 발의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사법부와 입법부가 견제를 하는 구조로 해서 입법부에 비상계엄 해제 권한을 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걸 하면 나중에 비상계엄이 잘못됐거나 했을 때는 탄핵을 하게 되면 사법부에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심판을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체크 앤 밸런스의 부분인데 비상계엄을 발의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의, 행정부의 권한 자체를 지금 사법부에서 건들게 만든다거나 입법부에서 건들게 만든다는 것은 행정부 자체의 권한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지금 통제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면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것을 아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소위원장 부승찬** 잠시만요.

이게 사실은 양쪽 입장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전적 동의와 관련된 국회 측 입장을 들어보면 또 이 논쟁이 계속될 거니까 추후에 다시, 시간 관계상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김병주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된 것 조항만 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고 정부 측 입장 듣고,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또 종합적으로 디베이트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우선 시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16쪽이 되겠습니다.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 동의 신설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수의 의원님께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박선원 의원안 등 일부 개정안들은 전시인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생략하도록 하자 또 이수진·이해민 의원안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계엄 선포 후 24시간 또는 48시간 이내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자, 즉 사전 동의가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까지 생각한 부분이고요.

검토보고입니다.

법학계에서는 계엄이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한 국가의 긴급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시급성을 인정하여 국회에 사후 통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에의 통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어떠한 결과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단지 계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엄법 제4조제2항에서 자체 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도록 한 것은 계엄에 대한 입헌주의적 통제 수단으로서는 매우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헌법에서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고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는 기관이므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사전적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계엄의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계엄권을 남용하는 문제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에 대한 의견은 계엄에 관한 헌법 규정에서 국회의 사전적 동의를 정하지 않은 것과 다르게 법률에서 사전동의를 정한다면 계엄 제도를 두어 위급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한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할 수도 있다 이리면서 국회의 사전동의와 같은 절차를 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것도 1번 사안과 같은 의미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일단 개별적으로 의견 듣기보다……

○**소위원장 부승찬** 전체 설명하고요?

○**김병주 위원** 사전 하고 정부 측 의견만 일단 다 한번 들어보고 다시 원위치에 가서 토의하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뒤의 것하고 다 중복되거든요.

○**소위원장 부승찬** 동의하십니까?

○**김병주 위원** 진행의 묘미를 해서.

○**임종득 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허영 위원** 쭉 듣고 그러면 이게 개헌이 필요한 사항들은 제외하는 측면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법률 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좁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걸 듣고 2개로 카테고리아이즈(categorize)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구 문구 각 분야별로 여기 헌법에 나온 내용이 주인데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구체화하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여기와 관계없이 별도로 계엄법에 추가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법부에 대해서 비상계엄하에서도 민주주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치활동 금지를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헌법과 충돌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 활동을 보장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비상 해제 결의안을 할 때는 국회의원이 어디에 있든, 감옥에 있더라도 그 사람 참가시킨다 이런 것들은 추가로 별도의 항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제도적인, 헌법과 충돌이 안 되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걸 보고, 이 안에는 주로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 말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을 하면 어느 정도 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검토보고 의견까지 하고 정부 측 의견 바로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소위원장 부승찬** 예, 바로 듣고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21페이지, 국회에 대한 계엄 선포 통고 등을 하지 않은 경

우 계엄 선포의 무효 등과 관련된 개정안들입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계엄 선포 통고 등의 계엄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그 계엄 선포를 무효로 하는 안들이 있고요. 또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려는 안들, 그리고 부승찬 의원안은 대통령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계엄군 등의 방해로 국회가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계엄은 해제된 것으로 보려는 것, 그리고 국회에 대한 통고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세부적인 안들이 그 밑에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에 대한 계엄 선포의 통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헌법 제77조제4항 및 계엄법 제4조제1항의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들은 대통령이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른 계엄 선포의 국회에 대한 통고 의무 및 국회 집회 요구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계엄이 법상 무효가 되거나 계엄군 등의 방해로 국회가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계엄은 해제된 것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국회가 헌법 제77조제5항의 계엄해제요구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사처도 계엄의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두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 문제도 앞의 것하고 연계가 돼서 헌법과 충돌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같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적 국회 승인(동의) 및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 의무 신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전시인 경우에는 국회의 사후동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의원안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의장이 자체 없이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려는 안들이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들은 계엄의 중대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하여 신속히 사후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적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계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계엄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동의 절차를 신설하려는 입법 취지와 함께 헌법 및 현행법의 계엄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 절차를 보완할 필요성, 해외 입법례 및 법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같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지속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 후 계엄의 효력 상실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 즉시 계엄의 효력 상실 등을 하려는 안들이 있고요. 또 해제를 요구한 때에 계엄이 즉시 해제된 것으로 보려는 안들, 그리고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엄을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회의장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하려는 안, 또한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간주하고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려는 안 등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헌법 제89조는 계엄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 제11조제1항은 자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또한 이 경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계엄해제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규정으로 인해 24년 12월 4일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의 사당 본관 건물 등에 진입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12월 4일 오전 1시경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나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계엄해제 공고는 국회 의결 후 3시간 이상이 지연된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개정안들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경우에 계엄의 효력 상실, 해제 의제 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통해 계엄의 효력 상실 시점 등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계엄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입법조사처 의견은 헌법 제77조제5항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가 있으면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해제요구를 하면 대통령은 당연히 이를 해제하여야 하며 계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을 예상한 것으로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으면 그 즉시 계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입장 동일합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40쪽입니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기능 보장 및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에 대한 방해행위 금지 명시 등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고 국회 및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

한 방해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안들입니다. 다수의 의원안들이 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벌칙을 규정하는 안 중에 부승찬 의원안, 이강일 의원안은 이를 위반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안이고요. 권칠승 의원안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 개정안에 동의하고 향후 벌칙 규정은 의원님별로 제시해 주신 것이 좀 상이한 안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 과정에서 결정해 주시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계엄 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보장 및 체포·구금 금지 등 관련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도록 명시하려는 안입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위한 본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국회의원 체포 또는 구금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안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에 대한 체포·구금 금지 또는 국회의 동의 요건을 신설하려는 안 등이 있습니다. 한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내지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 금지를 신설하려는 안 등이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계엄법 제9조에 따른 특별조치권 및 이에 근거한 포고령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바, 이 경우 계엄군 등이 국회의원을 포고령 위반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구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이 계엄해제요구를 위한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들은 계엄 시에도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근거한 포고령 위반 등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구금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계엄해제요구 관련 안건에 대한 국회 심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가 계엄해제요구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조사처는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불체포특권을 인정하도록 정하는 것은 계엄의 해제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타당하므로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정부 측 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이고 현행법이 어떠한 범죄에 관련된 현행범인가에 대한 것들의 규정이 선행되어야 될 거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의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회의 참석 조치 신설 등입니다.

다수 의원께서 계엄사령관 및 행정기관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한 경우에도 제11조제1항 등에 따라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이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도록 하려는 안들입니다. 김민석 의원안을 포함한 여러 의원안은 국회의원이 현행법으로 체포·구금된 경우에도 국회회의 참석 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것도 약간 헌법과 충돌되는 요소가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계엄해제 이후 국회 보고 관련된 것입니다.

개정안들은 계엄해제 이후 대통령,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이 계엄 기간 중의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 군사법원의 재판 사항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기간 동안에 헌법과 관계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권한 등의 오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시에 헌법 및 계엄법 등의 요건과 절차 등 관련 법규 등을 준수토록 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군사법원의 재판 사항에 대한 보고 사항 이것도 삼권분립의 취지하고 약간 충돌되는 요소가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가 돼서 논의가 되고 또 재판 사항이라는 그 사항 자체가 너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것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지금까지 의원안에서 다수 제기됐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은 그 밖의 개정 사항입니다. 한 10건 이상 되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개정 사항으로 먼저 목적 규정의 수정 및 위헌·위법한 불법적 계엄 금지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정율호 의원안은 계엄법의 목적에 ‘민주적 절차와 공정한 계엄 관리를 위하여’를 추가하고 불법적 계엄을 선포하거나 시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계엄 선포 건의권 삭제·제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모경종 의원안 등 다수 의원이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박홍배 의원안은 국방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적과 교전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안입니다. 이강일 의원안은 국무총리가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통령에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것은 계엄 선포의 요건이 될 수 있는 선포 건의 자체가 삭제되는, 장관 두 분이 삭제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계엄 기간의 제한 및 그 연장에 대한 국회 동의 신설과 관련된 개정안들입니다.

먼저 개정안들은 계엄 기간의 제한 그리고 계엄 연장에 대한 국회 동의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일단 계엄 기간을 제한하고 그 이후에 계엄 연장에 대한 국회 동의를 신설하는 것이지요.

예컨대 권향엽 의원안은 계엄기간을 7일 이내로 그리고 계엄 연장에 대한 국회 통보시한을 72시간 전, 그리고 계엄 연장과 관련된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려는 안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개정안들은 계엄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의 연장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계엄 기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별조치가 수반될 수 있는 계엄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것도 앞의 헌법과 같이 논의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계엄 시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 제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영교 의원안은 군이나 경찰 등은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을 위해 국회를 출입할 수 없고 국회의원이나 국회 직원, 일반 국민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안입니다.

조국 의원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를 위반한 자가 국회 내에 있어 체포를 위해 국회로 들어올 경우에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 정성호 의원안은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 경내 출입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고민정 의원안은 계엄 시행

중에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안 등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개정안들은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 제한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계엄해제 요구 관련 안건에 대한 국회 심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의장의 실질적 경호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고 세부 내용은 조국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께서 해 놓은 국회의장의 승인이나 허가와 같은 것들에 대한 합의가 되면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재계엄 선포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서삼석 의원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국방부차관 김선호**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다시 계엄’이라는 용어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 내용적 반복적. 그리고 또 헌법과도 충돌되는 요소도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74쪽 되겠습니다.

주요 공직자의 선포된 계엄에 대한 의견 표명 신설입니다.

김재원 의원안, 문정복 의원안은 대체적으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을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장은 선포된 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3시간 이내 혹은 자체 없이 표명하도록 하려는 안들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개정안들에 대하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심야, 주말 등에 발생할 수 있어 선포된 계엄이 계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 판단 및 법리 해석 등에 일정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엄 선포 시 3시간 이내 또는 자체 없이 신속히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의견 표명을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방식이 추상적이거나 막연하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과 같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76쪽 되겠습니다.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공고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해제 요구권 신설입니다.

정준호 의원안은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를 공고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특별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계엄사령관이 이를 해제하고 공고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특별조치의 남용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계엄사령관에게 부여되는 관장사항과 지휘·감독권 및 특별조치권 등에 대해 국회의 감시와 통제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계엄 집행에 있어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학 연구가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계엄포고령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범에 대해서 국회가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것도 앞에 헌법과 관련된 내용의 논의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78쪽, 계엄에 대한 규범적 내용 교육 실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국 의원안은 국방부가 각군 위관급 이상 지휘관에게 연 1회 이상 계엄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80쪽 되겠습니다.

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 관련된 사항입니다.

계엄사령관의 임명과 관련돼서 현행법 제5조는 현역 장성급 장교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을호 의원안은 계엄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 또는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이고요. 박상혁 의원안은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한다. 다만 합동참모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강일 의원안 5조는 계엄사령관의 임명 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이고요.

다음,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6조는 계엄사령관이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정을호 의원안은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직접 지휘·감독토록 하고 계엄지역이 2개 미만의 도인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합동참모의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관련하여 합동참모의장은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졌으며 현역 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므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로 합동참모의장을 명시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전시 등으로 인한 비상계엄하에서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을 겸할 경우 전시 등에 작전부대 등에 대한 작전지휘뿐만 아니라 계엄지역의 행정사무와 사법사무 등에 대한 권한을 겸함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고위급 장성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권한의 균형 있는 배분이 이루어질 소지도 있고 전시 상황 등에서 합동참모의장의 업무 과중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입법조사처의 경우에도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통령이 다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전시나 사변의 경우 합참의장은 우리 군에 대한 군령을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무를 맡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합동참모차장, 육군참모총장 등의 순으로 계엄사령관의 임무를 맡게 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전체적으로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과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84쪽, 계엄 시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보상 기준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율호 의원안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또한 손실액의 산정을 기준 과세표준만 감안하도록 한 것을 개정해서 과세표준 및 감정평가액을 감안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박상혁 의원안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정율호 의원안과 관련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므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시 등의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계엄이 선포된 경우 국가 경제에 악영향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전비 지출 증가 등으로 국가 재정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국가비상사태에서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행정 부담, 절차 지연과 함께 국가재정 부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박상혁 의원안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국방부가 계엄법 제9조의4 등에 근거하여 파괴된 국회 소관의 국유재산 등에 대하여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계엄 시 일부 군인이 파괴한 국회 소관의 국유재산에 대한 국방부의 적절한 보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개정 취지와 함께 현행 규정의 입법 취지, 국가비상사태 시의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상황과 국가재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사법사무 등의 평상화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법 제10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내란·외환·살인 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계엄사령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 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을호 의원안 제15조는 위의 죄들을 범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관할 법원이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계엄사령관이 필요한 경우 군사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강일 의원안은 현행법 제12조제1항이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 상태로 복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계엄이 해제된 즉시 평상 상태로 복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 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하도록 하고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을호 의원안 제18조 및 서영석 의원안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의 1개월 범위 내의 연기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국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및 지휘·감독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을호 의원안은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을 비상계엄 시 현행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에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로 그리고 경비계엄 시 현행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에서 ‘행정사무’로 변경하고,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과 관련하여 경비계엄 시에는 현행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지휘·감독 범위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할 때는 주무장관과

행정구역 최고책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민정 의원안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대상에서 헌법재판소 및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선거관리기관을 명시적으로 제외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정을호 의원안은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을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에 국한됨을 명시함으로써 ‘모든’이라는 용어에 근거하여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을 확대 해석, 적용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을호 의원안 제7조제2항은 경비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에서 군사에 관한 사법사무를 제외하려는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경비계엄 상황하에서 일반 사법·행정사무도 아닌 군사에 관한 사법사무까지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92쪽입니다.

또한 정을호 의원안 제8조는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과 관련하여 경비계엄 시에는 현행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지휘·감독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헌법 제77조 3항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경비계엄 시에는 사법기관을 지휘·감독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고민정 의원안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대상에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및 헌법재판소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으로 계엄 시 선거의 중립성·공정성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기관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경우 헌법기관인 국회도 명시적으로 열거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 개정 취지에 동의하고 각 의원님들이 내놓은 안들에 대한 차이점도 좀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도록 문구라든지 표현을 논의해서 검토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94쪽 되겠습니다.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범위 제한 등입니다.

정을호 의원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을 현행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서 ‘제한적으로 체포·구금·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고 거주·이전 등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로 제한적으로 축소하고 동시에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신설하고 동원 또는 정발을 하는 경우에도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민병덕 의원안은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단체행동을 제외하려는 안입니다. 또 황희·채현일·권향엽 의원안 등은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삭제하려는 것

입니다. 또 박홍배·이수진·한창민 의원안 등은 공통적으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의 자유와 단체행동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번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다음, 98쪽 되겠습니다.

계엄 선포 요건의 변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용해인 의원안은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 중 상황 요건을 현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전시·사변, 무장 폭동 또는 반란’으로 명시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한창민 의원안은 그 상황 요건을 현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라는 규정을 ‘무장 폭동, 반란, 전시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하여 국가안보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어’로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박상혁 의원안은 필요 요건을 현행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군경에 준하는 무장력이 수반된 소요나 반란에 대응하여’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양문석 의원안은 상황 요건에 ‘무력이 수반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안입니다.

검토보고 요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프랑스와 같이 비상계엄의 상황 요건을 명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비상계엄의 자의적인 선포를 제한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비상계엄의 상황 요건을 전시·사변이나 무장 폭동 또는 반란 등으로 제한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자의적인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 해외 입법례, 헌법 제77조제1항의 계엄의 상황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것도 헌법과 같이 논의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마지막으로 102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기본권 보장입니다.

이해민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계엄 시에도 인터넷 접속과 디지털 통신의 기본권은 보장토록 하고 다만 군사작전 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부분적 제한이 가능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등에 근거하여 디지털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사상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본권 제한을 필요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음을 법에 명시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디지털 기본권에 대한 학술적 정의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으나 디지털 기본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대한 입법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관계 법률에서의 정의 규정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과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그 밖의 벌칙 등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을호 의원안은 안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계엄 선포의 통고, 불법적 계엄을 위반하거나 이에 조력한 사람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7조를 위반하여 계엄을 해제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를 위반하여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을 방해한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천하람 의원안은 제7조 3항 및 8조 1항을 위반하여 국회의 사무를 관장, 지휘, 감독하거나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제한한 자 등에 대하여 형법상 제87조(내란) 죄로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한창민 의원안은 이 법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계엄을 선포하거나 시행한 경우 이에 가담한 대통령·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은 무기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형별 규정은 다른 법률 규정하고의 균형성이거나 형평성을 같이 좀 봐 가면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12·3 계엄과 관련돼서 이 법률 개정 소요가 너무나 방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과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권능이 침해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히 심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부와 그리고 국회 간의 협조를 통해서 법은 개정될 필요성이 크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어디 잠깐 가야 돼서 먼저 의견을 제기하겠습니다.

쭉 들어 보니까 계엄법 수정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는 저도 이것 검토할 때 늘 고민이 헌법과 충돌되는 부분에 좀 국한해서 했었는데 충돌되지 않으면서도 국회의 권능을 제한 못하게 하는 제한 사항들을 별도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 헌법과 충돌되는 것은 사실 여기에서 논의해 봐야, 여기서 올라가도 법사위라든가 또 법이 제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헌법과 충돌되는 것을 좀 제외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특히 여기서 보니까 예를 들면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기능 보장,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보장 이런 사항들은 쉽게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헌법 정신이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하에서도 입법

부는 비상계엄 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헌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좀 포함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가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 군이 비상계엄이나 위헌적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국민들도 안 되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전체 소팅(sorting)을 다시…… 오늘 이것을 그대로 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위법적인 것, 위헌적인 것은 아예 고려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한 번 더 다음 주쯤이나, 이것은 급하니까 최대한 빨리 한번 더 저는 재심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

### ○허영 위원 대체적으로 김병주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쭉 다 훑어보니까 헌법적 충돌이 있는 사항과 그다음에 정부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또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법률 개정안, 다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자구 수정과 그다음에 타 법률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수정이 이루어지면 모두 동의가 가능한 사항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개정안의 의견이 일치하는데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안이 또 있고요.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상세적인 내용은 말고, 상세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그 카테고리를 재정립해 가지고 놓고 헌법 충돌 사항은 제외하고 완전 다 동의하는 것 그다음에 자구 수정이나 내용의 일부 수정이나 별처 조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 법률과의 관계라든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재차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손쉽게 계엄법의 아주 실효성 있는 그런 개정안들이 도출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나, 그 차원에서 84페이지에 보면 지금 정부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보상 기준 등에 대해 가지고 신중한 검토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계엄 상황에서, 지금 12·3 비상계엄하면서 국회의 재물 파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법적 기준이 없다고 해 가지고 보상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이런 개정안이 나온 건데 명시적으로 국회의 다양한 재산들을 파괴한 파괴 행위의 주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국방부가 동의하지 못하고 신중한 검토를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정부가 판단을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주한미군 주둔지의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는 여러 가지, SOFA 협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국방부가 환경오염 정화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지금 예산을 태워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비상적인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도 얼마든지 지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이런 보상이나 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게 지난번에 여기 국회의 유리창 깨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사실 현행 보상 규정에는 기관 대 기관에 일어난 이런 것들은 보상 체계로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포괄되고 있는 것은 그것 외에도 민간인 쪽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다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부동의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 그리고 주체 안에 있는 범위를 설정해 가면서 이것을 논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쪽에서 좀 전향적으로 같이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아침에 회의를 하기 전에, 어제부터 제가 기자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계엄법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통과를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어떤 것을 위주로 할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법에 대해서 자꾸 뒤로 미룬다면, 기자들뿐이 아니라 국민들도 지금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발령되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또 의원들도 많은 법을 발의했는데 그냥 다음으로 넘기자 이것은 안 됩니다. 오늘 단 몇 개 법이라도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안 시키고 우리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국회가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관님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동의도 얻고 또 수석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그리고 국민생활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 우리 의회가 의사 결정하는 데 좀 더 보장해 줄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은 법을 입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법은 못 하더라도 오늘 중으로 이 안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넘기자 이거예요. 넘기지만 그렇지 않은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들은 지금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 지금 60개 개정안 중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고려해야 될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60개 개정안 대부분의 내용들이나 개정 취지를 보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되어 가지고 좀 문제시되는 부분들을 개정하자라는 의견들이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발령 요건에 보면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비상계엄을 발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되어 가지고 생각들이 많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은 사실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기준들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지금 개정안의 상당 부분 내용들이, 만약에 전시에도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줬을 때 문제가 없느냐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전시나 사변에 관련됐을 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구분해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우리 소위에서 지금 국회의원 6명, 7명이 모여 가지고 법적 지식도 충분하지 않은데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이것은 안 되고를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전시·사변 상황에서는 이것이 지켜져야 된다, 하지만 12월 3일 비상계엄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이것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그것을 구분하고 하는 부분들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오늘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요해진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허영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그런 카테고리로 재리스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시간적 소요는 어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들은 제외하고, 그 분야는 제외하고.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국방부랑 어떻게 협의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일단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헌법 개정사항이라는 헌법 부분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 부분은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허영 위원** 오후에 재개해서 논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오후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허영 위원** 그런데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바로 처리를 하자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게 정리가 되어야 처리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수석전문위원님하고 국방부에서 위헌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딱 빼 버리면 일단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만 한다고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집행부서인 국방부의 수정의견을 작성하는 과정이 조금 지난한 과정이 있어서요, 바로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허영 위원**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예.

○**허영 위원** 그리고 보면 위헌적 사항도 사실상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것은 얼마든지 입법정책적 결정으로 가능하다라는 측면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논의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는데 오후에 속개해서 이것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지금 오전에 이렇게 해서 쟁점이 정리가 된 상황이니까 그 쟁점을 다시 정리해서 정리된 이후에 하여튼…… 내일도 법안소위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도 법안소위를 열어서 그러면 내일 정리된 쟁점을 가지고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윤상현 위원님.

○**윤상현 위원** 차관님께서는 그것을, 헌법개정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윤상현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어떤 법률 중에서 이것은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한 9개 정도의 제시됐던 내용들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 동의를 했고,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법안이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내용들의 법안이 다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의원님 법

안을 그 안을 규정하는 법안으로서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단시간 내에 국방부 의견을 피력하라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각각 발의하신 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안이 가장 국방부가 생각하는 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선원 위원 저도 의견을 드리면……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조금이라도 진척을 내자 하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처음 시작을 한 거니까, 오늘 하루 안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만 내면 그것은 상당한 비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법안심사소위 자체도 과연 얼마큼 집중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가운데 혹은 공감한 가운데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영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좀 더 심각하고 신중하게 깊이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위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허영 위원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현재도 아니고, 우리가 법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고 그게 일부 헌법 속에서 무리 없이 소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87년 헌법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약간 부분적으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뭐라고 그러셨지요? 좋은 표현 쓰시던데, 위헌이 아니고…… 아니, 아까 좋은 표현을 쓰셨어요, 수석전문위원님이.

그래서 헌법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자구도 중요하지만 헌법의 기본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위헌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일단은 적어도 계엄법이 이런 정도로는 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의견을 충분히 나눈 가운데 그런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은 헌법과 부분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심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지금 첫 소위 회의니까 충분하게 검토되고 개정을 한다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중에서 헌법과 어떻게 호응될 수 있도록 조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양한 의견들 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 헌법에 위배된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맞다고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사후동의제 같은 경우는 헌법에 위배되는 게 없거든요. 국회의 권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고, 사전동의 같은 경우 문제가 되지요. 이게 대통령이 헌법상 갖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사전동의는 헌법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헌법 제77조 4항에 보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이런 조항 같은 경우는

이것을 대통령이 위반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무효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과연 이게 헌법개정의 문제냐, 헌법을 위배하는 거냐, 저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전에 이루어지는 일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했을 때 자연스럽게 해제되는 것은 저는 헌법에 위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목록화를 하고 그것에 맞춰서 또 심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직권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0항까지 60건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시한은 정해 주셔야지요, 그래도.

○**소위원장 부승찬** 그것은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허영 위원** 정리되는 대로, 그 쟁점 목록이 다시 정리되는 대로 해서.

○**소위원장 부승찬** 예.

○**박선원 위원** 대개 그래 놓고 한 1년……

○**한기호 위원** 제 의견은 소수의견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목록화를 좀 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님의 입장도 있고, 저의 입장도 한기호 위원님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박선원 위원** 상충하는 건 아니에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런 것 말씀드리고요.

양해해 주시면 그래도 조금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심사자료 2권의 2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이것은 정부 제출안입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에 대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영업 미개시의 경우입니다—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는 영업을 하다가 휴업한 경우—이때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제조·판매업자의 영업 의사에도 불구하고 영업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환경적·외부적 요인, 예컨대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고려하여 제조·판매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사업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의 미개시 또는 1년 이상의 계속적인 휴업 시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다수의 유사입법례가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내 주세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것은 국방부에서 제시했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복하고 군용장구를 제조·판매업하는 이분들의 경영 부담을 좀 덜어 주기 위해서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유예시켜 주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그런데 정당한 사유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좀 있어서 저희 개정안에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 보시면 수정안 1안·2안 해 가지고 2개의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5쪽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래서 만약에 관련된 거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제시한 수정안 2안으로 수정을 하면 국방부, 수용을 하고 동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한기호 위원** 이의 없습니다.

○**허영 위원** 동의합니다, 수정안 2안.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그 소송에 대한 변호인 선임 등의 지원 근거 마련과 관련된 것입니다.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개인의 차원이 아닌 소속 기관의 차원으로 확장시켜 국가가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인 사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 범죄의 예방·제지와 관련된 직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또한 유사입법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소방기본법에 따라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도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정안의 규정은 필요해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직무수행 중 발생한 모든 책임에 대해 소송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초하여 발생한 소송에 대해서까지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사후적으로 해당 군사경찰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먼저 군사경찰 활동의 보장을 위해서 법안을 발의해 주신 허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하지만 그러나 또 개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화는 필요로 하고, 아까 전문위원님 수정안 중에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15쪽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거기에 보면 의원님 안에는 장관과 각 군 총장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까지 확대해 주시면 그 예하부대에서 경찰 운영하는 부대장도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고의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명기한 수석전문위원실 수정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 이의 없습니다.

○**허영 위원**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소위원장 부승찬** 예, 말씀하십시오.

○**임종득 위원** 좋은 안을 개정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범죄의 범위에 대한 설정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송 관련해서 지원을 한다는데 근거는 마련이 되는데 모든 소송에 대해서 지원하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1개로 정리만 해 주면 아주 좋은 제안이 될 것 같습니다.

○**허영 위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수정안에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만들어져 있고요. 직무대행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데 의견들이 일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위원장님, 1건 더 있습니다. 소송 지원뿐만 아니라 16쪽,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부분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려는 규정입니다.

군사지역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군사경찰로 하여금 적시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거나 제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과 형의 감면이 제한적인 조건하, 예컨대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등에서만 인정되어 공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또한 군인의 군사작전 수행이나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타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형사책임을 감면하고 있는바, 형평성 차원에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유사 직종인 경찰관 및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의 감면 규정이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형사책임의 감면대상이 되는 범죄에 군사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형의 감면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있으십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동의를 하고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제시한 수정안 그 내용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군사경찰에 관한 부분들은 당연히 그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사 직종인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군인 같은 경우는 군사경찰만 문제를 삼고 있는데, 물론 횟수는 적을 수 있지만 일반 군인들이 이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이것은 군사경찰 직무수행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가더라도 그것은 한번 또 확장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영 위원** 하여튼 나중에 그것은 더…… 그리고 수정안에 일단 모든 범죄 외에 형법이라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특별법 여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법에도 이런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정안에 동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3항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24쪽,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님 대표발의 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은 관할통제권자, 예컨대 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 방어해면구역에서 퇴거의 강제 등을 조치할 경우 행정기본법 제32조(직접강제) 또는 제33조(즉시강제) 절차에 따르도록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가 되겠습니다.

관할통제권자가 행정상 강제를 할 경우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에 관한

조문을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의무자에게 직접강제 이전에 여러 절차, 예컨대 집행책임자의 증표제시, 이행기간 부여, 계고, 통지 등이 있는 점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의무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의무 이행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님에 동의하는데 좀 설명드리면, 이 방어해면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해역지역에 있을 때 강제 퇴거시키거나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해 온 건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행정기본법에도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 규정을 맞춰서 공시도 하고 이런 절차를 해서 하라고 하시는 건데 취지는 동의하는데 사실은 그 사안을 보면 그런 행정절차를 준수하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조치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는 그 조문대비표에 보면 국방부 수정의견으로 동의하고, 다만 여러 가지 안보나 국방을 위해서 긴급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부수적으로 넣어 주시면 앞의 것에 대한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만 상황적 예외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 수정안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임종득 위원** 방금 정부안대로 하면 보완이 될 것 같아요.

○**박선원 위원** 아니, 그래도 ‘국가안전보장·국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박선원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아마 해역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군사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갑자기 대간첩 작전을 한다든지……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박선원 위원** 북한잠수함 침투 속보가 있다든지……

○**국방부차관 김선호** 민간 영역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구분이 안 될 때 군이 선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부승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소위 심사자료 2권 32쪽이 되겠습니다.

64항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으로 질병관리청장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오물풍선을 통해 발생 가능한 독극물이나 바이러스 등 생물테러에 따른 현황 파악, 감염 위험성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당하는 정부의 소관 부처가 포함되게 함으로써 생물테러 안보체계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이 원활하고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생물테러 위협 발생 시 질병관리청에 의한 업무 협조가 중앙협의회 위원인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져 신속한 업무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정부조직법상 질병관리청은 중앙협의회 위원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현재 중앙협의회 위원에는 각 장관 소속의 외청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히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모두 중앙협의회 위원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성 및 효율성과 타 외청과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은 최근까지 동 법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 의견이었습니다만 오늘 정부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동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포함을 시켜도 실효성은 사실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법에다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다른 외청,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속해 있는 다른 외청과 형평성 차원에서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포함시킨다고 할 경우에 총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박선원 위원** 그래도 정부에서 좋다고 했으니까 해 놓지요. 왜냐하면 질병관리청이 생물테러 위협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생물테러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준비가 잘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쪽에서 질병관리청이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적어도 우리 국가안보 관련 종사자 입장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을 더 듣고 싶은데, 신중검토에서 동의 쪽으로 전환한 이유가 뭔지?

○**국방부차관 김선호** 신중검토했던 것은 한기호 위원님하고 임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외청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이렇게 적시된 경우는 없기 때문에……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을 유지했었는데, 저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이것이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이 됐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있지만 질병관리청장이 사실은 주도적으로 상황 관리를 하는 것을 했었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 됐을 때 보건복지부장관보다는 질병관리청장이 좀 더 주도적으로 자기 역할을 해서 군과 통합된 방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쪽이 좀 더 나와서 이렇게 동의하게 됐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사실 생화학과 관련된, 코로나도 그렇고 향후에 이런 유의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질병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했다고 정부 측에서 그러는데 우리……

○**임종득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예.

○**임종득 위원** 그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외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넣기 시작하면 다 들어가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들어가야 될 외청들이 꽤 있어요. 그때마다 들어가게 할 것이나 하는 문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의 법과 시행령을 가지고도 총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외청을. 그런데 그걸 예외적으로 질병청만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행정소요나 관리 측면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호 위원** 아마 질병관리청장님이 요청을 했었을 거예요. 여기도 정부 의견 중에 질병관리청장은 개정안에 찬성해서 넣어 달라고 했는데, 국가 전체로 봐서 통합방위협의회 제가 위원장 할 때도 참석하고 여러 번 참석해 봤는데 이게 사실 국가적인 재난으로 됐을 때는 장관이 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청장을 법에 의해서 명문화해서 넣는다는 게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임종득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소위원장 부승찬** 먼저 말씀하세요.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과거에 코로나19 때 보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개 보건 쪽보다는 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장관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전체 구조에서 복지 파트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성격이 다른 업무 2개가 붙어 있어 가지고 복지부장관이 이 분야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 때도 질병관리청을 별도로 만든 거거든요. 그 업무에 좀 더 전문적이고 충실성을 기하라는 뜻이어서 저는 정부 의견도 그렇고 하니 굳이

빼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종득 위원** 이거는 굳이 빼는 문제가 아니고 예외적으로 하나를 넣자는 이야기지 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넣어 주는 게 좋지요. 다른 외청하고는 다르지요.

○**임종득 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통합방위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외청 중에 중요도가 질병청이 가장 크냐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박선원 위원** 쭉 한번 예시해 보세요, 그러면.

○**임종득 위원** 경찰청은 어떨까요? 경찰청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박선원 위원** 경찰청은 행안부장관이 커버한다 이거지요.

아니, 진짜 실무를 해 봤어야……

○**임종득 위원** 통합방위법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들이 경찰청장이 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박선원 위원** 실무를 안 해 봐서……

○**임종득 위원** 실무는 제가 해도 더 많이 했을 건데……

○**소위원장 부승찬** 이게 제가 보니까 논쟁 거리는 아닌데 논쟁을 하고 그러십니까?

○**임종득 위원** 아니, 외청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 들어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그래도 정부에서도 동의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한기호 위원** 아니, 정부가 동의하는 건 아닌데요? 국방부에서는 여기 33쪽에 보시면 ‘개정의 필요성이 낮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해 놓고 두 번째 항은 ‘질병관리청장은 개정해 달라’ 이렇게 두 개가 다르거든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아까 국방부 입장도 동의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차관님, 질병청장 넣자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저희도 개정안에 질병관리청장을 별도로 위원으로 명기하자는 의견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지금 차관님이 보셨을 때 질병청과, 질병청은 물론 질병의 문제에 관련되는 것은 많아질 수 있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찰청이 통합방위법과 관련성이 훨씬 더 커요, 역할이. 그렇지 않습니까?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경찰청이 필요하면 제기하겠지요.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겹친다는 겁니다. 외청이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박선원 위원** 남의 걸 왜 우리가 걱정하시냐 이 말이에요.

○**한기호 위원** 아니, 그러면 토를 달아요. ‘필요시’ 이렇게 달아 놔요. ‘필요시 질병청장을 넣는다’ 이렇게 하면 되지.

○**임종득 위원** 아니, 총리가 넣을 수 있는데 뭐. 지금 현재 법에 총리가 할 수 있는데 뭐.

○**한기호 위원** 그런데 지금 법을 냈으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 할 때마다 항상 참석을 하는 건데.

○**박선원 위원** 임 위원님, 박근혜정부 때 코로나 같은 그런 사태에 초기에 대응이 잘 안 됐었잖아요. 그게 보건전문가가 아니라 복지전문가여 가지고 결국 장관을 바꿨어요, 보건 그런 쪽으로.

○**임종득 위원** 그건 인정해요.

○**박선원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박근혜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험을 토대로 질병관리청을 새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한 행정의 빈틈을 없애고, 생물 테러나 코로나 같은 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하고 직결이 되고 또 어떨 때는 그로 인해서 우리 군이 동원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질병관리청이 이 업무를 하겠다고 하고 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니까.

다른 데는 방금 한기호 위원님이나 임종득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시 이미 참석하고 있다고 하니 이걸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한기호 위원** 현재도 제도적으로 참석할 수 있잖아.

○**임종득 위원** 지금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질병청이 참석할 수 있다니까요.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필요시에.

○**소위원장 부승찬** 이거 아무리 봐도 논쟁 거리가 안 되는 건데 희한하네. 왜 시간 끌지 이거?

○**한기호 위원** 상임이냐 비상임이냐 이 개념인데 저희가 주장하는 건 비상임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상임이라는 얘기지. 상임으로 질병관리청장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박선원 위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우리 안보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의식을 일반 부처가 좀 갖고 있어야 우리도 도움을 받지요. 그렇잖아요. 구체적이든 뭐든 간에 우리 군인들이 많이 동원되잖아요.

○**임종득 위원** 아니, 지금 필요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한기호 위원** 제가 봐서는 비상임이 맞아요, 이거는.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복지부장관 전공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임종득 위원** 아니, 그러면 경찰청하고 행안부하고 관계도 전공 보고 결정할 거예요?

○**박선원 위원** 아니, 행안부하고 경찰청의 관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질병청 관계는 다르다니까요.

○**임종득 위원** 진짜 외청 중의 하나를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경찰청을 넣는 것은 내가 심각하게 고려를……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 다음에 논의하고 복지부장관 의견을 받지요. 그러면 돼요. 질병청장이 아닌 복지부장관이 넣자 그러면 넣자고.

○**박선원 위원** 아니, 복지부장관이 지금 기재부 재정관리관 출신이에요. 이런 분들은 질병관리청의 업무를 못 한다니까요.

○**한기호 위원** 아니, 그 사람의 임무가 그거지 그 사람이 무슨 출신이냐를 따지면 안 되지요.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 질병관리청이 와야 된다니까.

○**허영 위원**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 거 있으세요?

○**한기호 위원** 박선원 위원님도 군인 출신이 아니지만 국방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가 뭐가 중요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들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협의를 하세요.

○**한기호 위원** 장관 의견 들어보세요.

○**박선원 위원** 아니, 현행에 처장들 있잖아요, 법제처장·식약처장.

○**임종득 위원** 외청하고는 좀 달라요, 성격이.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거는 문제가 바로 총리실로 직제되기 때문에 문제는 다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의사일정 제64항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65항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은 현재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신청기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신청기한 연장방식, 현재까지 여섯 차례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장 방식이 아닌 신청기한을 삭제함으로써 보상금 등에 대해 영속적으로 신청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령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신청 기회를 놓친 대상자에게 기간의 제한 없이 보상금 등이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국가의 영속적인 책임 의지가 표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별보상의 입법례에서는 보상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위해 신청 기한을 정해 두고 있는 점 그리고 보상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을 설치해 인력 및 재정이 투입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신청기한을 1년 연장, 2025년 4월 1일부터 26년 3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의 동 법이 개정되어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해 추가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국방부의 미신청자에 대한 빠짐없는 발굴 노력이 전제된다면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보상 관련 국방부 소관 유사 법안의 경우 모두 신청기한을 규정하고 있고 신청기한을 삭제할 경우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방계혈족까지 지급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상 재정 소요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국방부도 수석전문위원처럼 이것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소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차관님,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지금 편성돼 있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한기호 위원** 조직 운영에 몇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보상지원단이 10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 매번 위원회가 개최돼서 심의도 하고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한기호 위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무제한으로 폐기하는 거는 다른 법도 다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무제한이라는 건 안 맞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난번에 이것도 연장해 줄 때 ‘내년도 3월까지 연장하는데 이거면 정말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물어봐서 ‘이 정도면 됩니다. 이제는 더 나올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했는데 왜 이 법을 발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정현 의원님이 이것을 대표발의 했는데 아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가 아니라 왜 이걸 발의했는지.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들이 파악하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재까지 이런 것을 미신청한 유족의 범위가 지금 한 970여 명 정도 남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연장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상자 자체가 없을 것이다, 그때 이거 연장하면서 그런 의견을 드려서 연장이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1년 연장을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그 이후에도 또 만약에 된다 그러면, 지금 한 여섯 차례 연장을 한 것입니다.

○**한기호 위원** 예,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연장했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렇게 진행을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 놓으면 기재부가 얘기한 다른 영역하고 충돌이 돼서 이게 보상의 영역이 또 달라지다 보니까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

○**한기호 위원** 지난번에 연장할 때도 논의할 때 뭐라 그랬냐면 ‘정말 충분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이 정도 내년도까지만 연장하면 정말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듣고 연장한 거거든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이걸 무제한으로 하자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차관님께 내가 묻고 싶은데 대상 인원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 9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6차까지 왔다는 것도 난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단순히 기간만 연장해 가지고 해소될 일이 아니겠다라는 의문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6차까지 하면서 그렇게 많지도 않은 대상 인원이 신청을 안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연장을 해도 못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위원장님, 동 법안은 최근 연장 개정하기 전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한기호 위원** 아, 연장하기 전에 발의했던 거구나?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예, 그러니까 11월 18일인데요.

○**임종득 위원**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65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6항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의사일정 제66항 한기호 의원님 대표발의한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서해도서 지역 수호와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첩보 및 유격작전 등의 비정규전에서 특별한 희생을 한 한국유격군의 대원과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한국유격군기념관 및 기념탑을 건립·운영하고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의 설립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합당한 예우와 충분한 지원이 체계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한국유격군에 대한 기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영웅적인 유격군 역사를 후세대에게 전승되도록 함으로써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자긍심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에서는 전쟁기념관 및 기념탑의 건립·운영,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및 전쟁사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한국유격군 기념관 건립, 학예활동 및 한국유격군에 관한 전사 및 역사 연구 등 제정안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일부 반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중 한국유격군에 대해서만 특별히 기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에서 기획재정부는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 보상 및 예우가 이루어지고 있고 타 참전단체와의 형평성 및 재정 소요 확대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한기호 의원님이 계속 발의해 주셨는데 저희 국방부도 계속 검토를 하지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다른 6·25 참전 단체는 이미 6·25 참전 법에 관련된 단체 법들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만든 법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루어진 겁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보상을 받는 것도 얼마를 받냐면 일괄적으로 1000만 원으로 딱 정한 겁니다, 일괄 1000만 원. 그러니까 사망했냐 이런 걸 다 따지지 않고 그냥 1인당 1000만 원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총 인원이 얼마나? 지금 파악된 것만 1만 389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받은 분들이나 등록된 분 이런 분들 전부 합쳐 봐야 실제로 한 5000명도 안 됩니다. 5000명도 안 되는데, 남은 분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느냐? 참전하신 분들의 명비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념비가 없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념비가 없다 보니까 우리 이름을 전부 새긴 명비라도 하나 세우고 싶다. 그런데 1인당 1000만 원씩 드렸기 때문에 돈을 걷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단체들은, 월남 참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석이 있는데 이분들은 비석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세우고 싶다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른 단체하고 달라서, 너무 늦게 생기다 보니까 또 연세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를 옛날 독도수비대에 대해 한 것이 있어서…… 이 법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국방부보고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걸 참고로 해서 독도수비대법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하는 자체도 다 돌아가셔 가지고 보상도 못 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고 아무도, 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반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기리는 사람도 없는데 돌아가신 분 이름이라도 한번 새기자 이게 이분들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것 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느냐? 지금 해 봐야……

얼마 들어간다고 판단하세요, 국방부에서?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1인당 1000만 원으로 해서 현재까지 보상 인원은 약 3800여 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이분들이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체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단체가 기념비를 세우게 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기념사업회를 만드는 데 평균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억 정도 들고요. 연간 한 8억 이상 듭니다. 그리고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만들 때 17년도 자료 보니까 약 130억이 들었고요.

사실 지금 그 기념관을 운영하는 데 매년 8억 이상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기념회, 기념관 관리 비용만 해도 고정비용으로 약 15억 이상이 매년 들어가야 되고……

○**한기호 위원** 그래서 여기는 기념관을 만들지 않습니다. 기념관은 안 만들고……

○**국방부차관 김선호** 기념사업회, 사업회를 운영하는……

○**한기호 위원** 사업회를 운영하는 것도 이분들 얘기는 ‘우리 다 세상 떠나면 끝내자’ 조건이 이거예요, 더 이상 계속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기념비를 세우겠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그런데 지금 비용적인 문제도 그 정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 국방부가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보훈사업이다 보니까. 그동안 월남전 참전, 6·25, 독도의용수비대 이런 건 다 보훈부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국방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로 사업비를 이렇게 지원하고 나머지 보훈·예우 문제는 보훈부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국방부에 발의한 법으로서 집행 부서가 다르고 법안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보훈부 쪽에서 이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보훈부도 아마 지금 조금 어렵다는 입장을 가져서……

○**한기호 위원** 보훈부에도 법안을 발의했는데 보훈부가 거부해 가지고 국방부로 내왔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정리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저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기념비와 정말 그 공로를 두고두고 기릴 수 있는 상징물 같은 것들을 꼭 만들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그런데 이게 보훈 성격이 있고 그리고 예산 문제는 하여튼 법적……

그런데 대행님,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기념비나 상징물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혀 근거가 없습니까, 다른 법률에?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 영역은 보훈부 소관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한 사례는 없습니다.

○**허영 위원** 한기호 위원님, 이것 보훈부 소관 법률로 어떻게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이게 제정법이네요. 제정법이고 하다 보니까 심의를 좀 더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국가보훈부가 맞아요.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거기서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넘어온 것도 맞고 그런 거라 조금 더……

이분들을 예우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법률의 영역이 아니라 정책의 영역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좀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 제일 큰 게 기념관을 만들어서 기념관을 계속 유지하려면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기재부가 제일 거부할 수 있는 요소인데 그건 제가 그분들하고 다시 얘기해서 기념관은 안 하고 기념비 사업까지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 볼게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도 일단 보훈부하고 부 간의 협의도 좀 해 보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적인 문제로 해결이 안 된다면 혹시 한번, 저희들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정책적 차원에서 일시적인 거니까 그걸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정책적 검토도 같이 병행은 해 보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이것하고 또 하나 있는 게 월남 참전자들에 대한 것도 없습니까, 지금. 각 지방마다 지방에서 한 것은 있는데 국가적으로 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월남 참전자들도 삼십이만칠천오백몇 분인가 되는데 이분들도 명비를 만들자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명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보훈부에서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안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국방위로 다시 내는 건데…… 지금 외국에 나가 봐도 요즘은, 제가 필리핀도 가 보고 호주도 가 보고 했는데 월남 참전한 돌아가신 분 말고 모든 분들에 대한 명비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요구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부하고 보훈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라도 누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저는 한기호 위원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한국유격군 세가 너무 약하거든요. 세가 왜 약하냐? 유격대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이 죽었어요. 그렇다 보니 후손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었고 그래서 법안도 늦게 발의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희생에 대한 기념은 해야 되겠다, 기억은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되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원래 보훈부에서 기념비 사업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보훈부 예산의 70%면 70%, 어떤 지자체에다 한다면 그 지자체 예산을 또 포함시키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법적 근거는 여기에 있는 이 법을 근거로 하고 국방부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 보훈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나 어떤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지자체나 단체가 50% 부담하면 최대 50%를 보훈부가 지원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스스로 할 능력도 없고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은 북한에 왔다 갔다 한 분들이라서 어느 지자체가 하겠다는 데도 없고 그냥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의사일정 제67항 정부가 제출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에서의 감염병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군감염병환자등, 군감염병의심자, 군보건의료인, 의약품, 장비 및 시설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정보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예방대책 마련 및 자원의 적시 적소 투입을 통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을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 예컨대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감염 관련 질병 정보 등이 수집·관리·보유·처리되고 타 부처 소관의 여러 정보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되며 퇴역한 군인 또는 퇴직한 군무원 등에 대한 관련 정보도 계속 보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감염병정보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감염병 예방·관리·치료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와 같이 목적 외의 정보 활용 금지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정의견 대비표는 76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취지는 같고, 아마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개인 보호를 위한 부수적인 내용을 좀 추가했는데 사실 그 내용은 여기에 명기하지 않아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모든 것들이 거기에 구속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굳이 개인 보호를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안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봄서 저희들 국방부안에서 제기한 원안을 좀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이의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67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인의 봉급액 산출기준 산정 시 반영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최근 늘어나는 군 인력의 유출 문제와 낮은 간부 획득률에 대한 경제적 차원의 대응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최근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해 간부들의 사기 저하 및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인 보수를 민간영역 수준과 비교하고 조정하는 정책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봉급인상률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바 군인에 대하

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수 균형 및 형평성 차원 측면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의 군인보수법은 제7조제3항을 통해 국방부에 봉급기준조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봉급액 산출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공무원의 봉급 결정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유명무실하다는 이유로 2013년 3월 22일 일부개정을 통해 폐지되었으므로 동 개정안의 내용이 위와 같은 법 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간 보수 균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도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고.

좀 말씀드리면, 황희 의원님 안의 핵심은 5년마다 군인 보수체계를 민간 동일집단과 비교한 실태를 파악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한 건이 있고요. 그 파악된 기준에 근거해서 봉급액 산출기준을 산정하도록 이렇게 두 가지 안을 하고 있는데, 일단 봉급액 산출기준은 이게 국방부 관련된 게 아니고 인혁처에서 공무원들은 통합적으로 하니까 저희가 관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인사혁신처에 협의한다 이 정도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이걸 5년마다 파악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 비교집단을 선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들이 있거든요, 어느 민간 집단을 군인의 어느 계급과 해서. 그러나 저희들이 봉급 산정할 때 그런 것들을 필요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해서, 사실은 군인복지 실태조사라고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활용한다 이렇게 좀 수정안으로 하면 아마……

취지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민간 보수와 비교해서 군인들의 봉급 체계를 상향으로 올리고자 하는 이게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인데 취지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국방부 수정안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수석전문위원실하고 해서 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확히 제기를 해서 그거를 의결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저도 이 법의 취지가 5년마다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군인이 자체적으로 군 봉급 기준을 산정한다고 하는 법의 취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말 열악한 처우, 상황 속에서 이런 조사가 필요하고 국가의 인사혁신처 내지 봉급 산정을 하는 기관에서 이 조사를 활용해서 산정 기준에 적용한다 이런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군인의 자체적인 봉급 산정 기준을 뭐 하라라고 하는 법의 취지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지금 국방부의 이야기를 들어서 수정안을 정리하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선원 위원** 예를 들면 공개가 되면 민간 쪽에서 민간 파일럿 봉급하고 비교하지 않고 ‘공군이 이렇게 많이 받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 동일집단이라

고 하는 게 사실은 민간 파일럿 때 공군 조종사들하고 비교를 안 하고 ‘군인들 많이 받네’ 그리고 ‘군인들 연금도 많이 받네’ 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5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비교해서 실태조사하는 거는 필요한데 과연 이것을 법으로 정해 놓고 그것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면 오히려 군인들 입장에서 보면 꼭 이익되는 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나, 우리의 정책 취지하고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인사복지관실이라든지 여기 또 장관직무대행께서 잘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수정안을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로 해 버리지요. 실태조사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어떨 때는 사실 지금 임금 수준을 박선원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실 밖의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군인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중·소위나 초급 간부들은 적지만 또 대위급 이상 이런 거 비교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5년 단위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번 정도는 해서 민간 수준과 비교해 보고 거기에 합당한 걸 해야 되니까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국방부가 공개할 수 있다’ 해서 재량에 맡겨 주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저희가 낸 수정안인데 일단은 ‘국방부장관은 산출기준을 산정한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정확하게 하면 ‘국방부장관은 산출기준을 인사혁신처와 협의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4번 항에 있는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이거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을 아까 김병주 위원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군인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군인복지 기본계획을 혹시 원하실 때 공개를 하면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8항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9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86쪽, 정부 제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제13조제2항은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군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군인연금인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퇴직 군인이 퇴직한 날 또는 그다음 날 다시 같은 직역, 예컨대 군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연금을 계속 정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외의 개정안은 현행법의 일부 용어 및 자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공무원이 퇴직한 날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는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라고 명시하고 있고 사립학교교직원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도 동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제처도 군인연금법 제13조제2항 등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문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공무원 등이라는 동일 직역 내에서 퇴직 후 그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실업상태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의 퇴역연금 지급 정지 사유 역시 해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역연금 지급정지 사유를 명확히 군인연금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그 입법 취지와 함께 법제처의 법령해석 이후 퇴역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명확히 해석되어 22년 11월 이후 형식적 퇴직 후 동일 직역으로 바로 임용 시에 퇴역연금을 일괄되게 미지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군인연금 퇴역연금 수급자의 군인연금법상 지급정지 사유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건 정부에서 발의한 것이고 좀 설명드리면, 일단은 퇴직하면서 군인들은 단 하루만 퇴직이 되더라도 군인연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혜택을 받았는데 그 인원이 하루의 공백도 없이 다른 공무원 직위에 또 취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연금에 대한 혜택을 받아서 그것들이 22년까지 지급이 돼 왔고요. 그런데 22년도에 저희가 법제처에 해석을 했을 때 연금이 정지된 퇴직 군인이 바로 다른 직종에 연계했을 때 그 중간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22년 이후의 지급을 그걸 근거로 해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좀 만들어 놓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원 위원** 특별히 기재부나 이런 데서 반대는 없을 거 아닙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그렇지요.

○**한기호 위원** 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법안 관계없지만 김병주 위원님은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군인연금 못 받잖아요.

○**김병주 위원** 예, 못 받지요. 똑같지요.

○**한기호 위원** 기여금 낸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병주 위원** 그 얘기했다가 지난번에 얼마나 공격 받았는데…… 언급을 좀 회피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물귀신 작전으로……

(웃음소리)

같이 한번 추진하시지요, 세 분이서.

○**소위원장 부승찬** 저는 참고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9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소위 심사자료 3권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3권의 2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부승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가 되겠습니다.

국방 연구 프로젝트의 연속성 확보, 장기간 근무를 통한 숙련도 축적 및 연구 성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동 사관생도에게 투자한 교육훈련비용이 장기 복무 과정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다는 점 등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의무복무 증가로 인한 군복무 부담 증가에 따른 지원율 저하 우려, 군 전체 조직 차원의 계급별 정원 조정 및 특기 배정 등 인력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부승찬 의원님의 개정 발의안 취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장기 자원을 확보한다는 목적에서는 좋은데 이게 아직 시행이 안 됐고 만약 정상적으로 된다면 26년부터 모집할 건데 이게 의무복무기간이 늘어나면 아마 선발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서 일단은 시행을 하고 운영한 다음에 그 인원들에 대한 복무기간을 차후에 한번 다시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 이 문제는 여기 김병주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먼저 의장님을 하시던 김진표 의장님의 법안 발의를 한 겁니다, 21대 때. 사실은 21대 이전에도 발의를 해 가지고 21대 이전에는 법을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21대 와서 의장님을 하시면서 발의를 해 가지고 이때도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의 것을 돌아보면 사관학교에 석박사 과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운용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 석박사 과정을 가르칠 교수진이 그리고 시험 도구부터 모든 것을 구비하기에 비경제적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고려대학교에 사이버 전사를 양성한다 해서 우리가 실제로 전액 장학금을 줘서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졸업한 인원들이 딱 1명만 장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찍 나가는 경우는 장학금 받은 걸 토해 내는데 토해 내도 좋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정도로 실제로 우리의 의도하고 짚은 청년들이 여기에 응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하면서도 그 당시에 얼마로 할 것이냐 논의가 많았지요.

그래서 6년으로 일단 해 보자 이렇게 한 건데 제가 봐서는 지금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들어올 인원이 있느냐 이것부터가, 이제 앞으로 그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국방부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를 지금 여기서 하자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장기로 하자 그러면 들어올 사람 전혀 없다고 봐요.

○**소위원장 부승찬** 정리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중에 시행하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입장이 중요하시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도 제가 법을 발의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10년 하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5년 차에 전역의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1년 빨리 전역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원래 10년 장기 복무자, 3사관학교, 3군사관학교들 보면 10년 장기 복무자들은 5년 차에 전역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1년 빨리 전역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오는데 이게 10년 장기 복무다라고 하면 안 오겠지요. 6년 있다가 ‘왜 내가 10년 동안 해야 되나’, 그런데 5년에 한 번 본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전역의 기회가 부여된다……

그래서 이게 과연 장기 10년, 6년 이런 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 저희가 막 병력이 남아돌 때,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저희 친구들이 방위가 한 50% 됐거든요, 50% 정도. 현역 그게 상당히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다 방위야.

그때하고 지금은 완전 다르지요. 지금은 완전히 인구절벽이고 35년이면 우리 영토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라는 기준만 놓고 보니까 ‘야, 내가 10년을 어떻게 하지, 내 인생 10년을 어떻게 바치지’ 그럴 수 있지만 5년으로 줄이면 본인이…… 저는 3군사관학교도 특혜라고 보거든요, 10년. 그러면 3군사관학교도 6년으로 줄여요, 내가 법을 다시 발의할게. 육해공 사관학교 6년, 의무복무기간 6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차별이라고 보여져요. 사관학교 오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군복을 입겠다고 해서 오는데 이게 지금 육해공군, 저도 공군사관학교 나왔습니다마는 이 차별이 기득권 세력이라고 봐요. 또 각 군에도 진급에 있어서 병과별로 또 기득권이 있어.

이런 것들은 이제 출발선은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 주셔야지, 10년을 홍보하지 말고 5년을 홍보해요.

○**한기호 위원** 여기 10년으로 하자고 하신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제 얘기는 5년에 전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선택권을 갖고 있잖아요, 사관학교는.

그래서 제가 제 법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 뭐 법안소위원회 위원장하면서 하나 통과를

못 시키냐고.

○**박선원 위원** 하나 골라 보세요, 위원장님.

○**한기호 위원** 아니, 김진표 의장님의 당시에 법을 발의할 때……

○**소위원장 부승찬** 자……

○**한기호 위원** 아니,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스라엘을 우리가 모델 케이스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국방에서 양성해서 내보낸 사람들이 이스라엘 과학기술을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그걸로 가자 이게 기본적인 김진표 의장님의 생각이셨거든요.

그래서 10년으로 바꿔도 뭐……

○**소위원장 부승찬** 좋지요.

○**한기호 위원** 하여튼 일단 시행도 안 하고 지금 만들기는 좀 이르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소위원장 부승찬** 예.

반대하는 것은 짧게 해 주세요. 자꾸 들으면 좀 그러니까, 시간도 아깝고.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사관학교 10년 이야기를 하는데 5년 차 전역이 있다라고 얘기 했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5년 차 전역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적은 숫자만 쿼터(quota)가 나오는 거고요, 그 인원만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부승찬** 거의 자율이에요.

○**한기호 위원** 저분도 사관학교 나오셨어.

○**소위원장 부승찬** 저도 나왔어요.

제가 5년 차 전역 때문에 병과를 조정해서 정보로 바꿨는데 IMF가 터지면서……

○**박선원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법안 원하는 것 하나 찍으세요.

○**임종득 위원** 원하는 게 뭐니까, 지금?

○**허영 위원** 군인사법은 될 것 같아.

○**소위원장 부승찬** 의견 있으십니까?

○**박선원 위원** 아니, 없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은……

○**허영 위원** 계속……

○**박선원 위원** 계류해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소위원장 부승찬**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소위원장 부승찬** 의사일정 제70항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런데 한기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법률은 제가 보니까 거의 다 통과가 돼요.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거나 정말 법과 군의 관계를 잘 아시거나 뭔가 비법이 있으신 것 같아요.

○**허영 위원** 잘 아시고 또……

○한기호 위원 저를 지명하지 마세요. 그 옆에.....

○소위원장 부승찬 다음 의사일정 제71항부터.....

○김병주 위원 한기호 위원님은.....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이것 하고.....

○김병주 위원 잠깐만, 얘기했으니까.

한 10년 동안 계속 발의를 해서 이제 통과되는 거예요. 초선 이제 겨우 해 가지고 뭐..... 안 그렇습니까? 계속 반복을 해서 지금 숙고기간이 10년은 대부분 됐고 저는 한 5년 된 거니까 숙고기간을 잘 고려해 주세요.

○박선원 위원 예, 죄송합니다.

○한기호 위원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몇 년 걸렸냐면 14년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법은 17년 걸리고.

○임종득 위원 설득을 시켰구먼.

○박선원 위원 존경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사실 한 위원님이나 저는 21대도 계속 법안소위를 해서 이 역사를 너무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을 자제하는 겁니다. 워낙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장 부승찬 회의 좀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부터 제76항까지 6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6쪽의 의사일정 제71항 부승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를 임관 시 장기복무 장교에 포함하고 의무복무기간도 6년에서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인 10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장기복무 보장 시 초급간부 복무의욕 증진, 우수인력 조기 확보 및 국방 R&D나 간호병과처럼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서는 10년 이상의 복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합니다만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의 장기복무 전환은 최근 인력수급 난항을 겪는 학군·학사장교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그리고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의 장기복무 지원율 49.9%를 감안할 때 장기복무 전환 시 지원율 변화와 군 간호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경우 유사 제도인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 창설 이래 장기복무 지원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것도 앞의 법안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3사관학교 출신들을 장기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에서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확정하지 못하는 것이 3사·학군·학사와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장기 병역구조상에서 계급 구조들을 조금 변화

시켜야 되는 이런 것들과 연계되다 보니까 지금 바로 이걸 법 시행을 하는 것은 조금 제한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런 장기자원 확보를 위해서 대상권에 놓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성일종 의원님이 3사관학교 장기는 법을 낸 것을 지난번에 심의해 가지고 보류시켰지요, 왜냐하면 학사·학군장교들하고의 문제가 생겨서. 지금도 지원 안 하는데…… 이것 때문에 ROTC 총동창회장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이것 하면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실 이게 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사관학교는 일단 어렵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간호사관 인력 자체가 필요한 인원이 있어서 그렇지 이 사람들 지원하는 게 장기를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지금. 위의 소령 이상 계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원율이 아니라 군의 수요 자체가 적다, 간호사관학교는.

그다음에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 창설 아래 장기복무자가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뜻하고 실제로, 이게 시장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일어나는 현상하고 전혀, 뜻하고 같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자, 의견.

○**박선원 위원** 진짜 제가 김용현 장관 계실 때 많이 싸웠는데 이것 하나 합의, 좋은 답변 얻은 것 이것 하나입니다.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임관 시 장기장교에 포함시키겠냐 했더니 이것 하나 해 준다고 해서 합의까지는 아니고 유일하게 저하고 의견 일치를 본 거니까 그 뒤의 의무복무기간을 몇 년으로 한다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장기로 꼭 좀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제가 발의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ROTC나 학사는 다릅니다. 거기는 징병의 목적이 강해요. 장기의 목적이 아니에요. 직업으로서 군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ROTC와 학사는 의무복무기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3사관학교나 간호사관학교나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직업으로서 군을 선택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교수준을 학군과 학사의 비교수준으로 한다면 이것은 진짜 우리 청년 장교들을, 직업으로서 군을 선택한 청년 장교들을 무시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면 지원자가 더 많이 옵니다. 왜? 5년에 전역할 수 있는 기회를, 자율의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간호장교들 그냥 간호장교 역할만 합니까? 이건 정책의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례가 있잖아요. 간호장교들을 타 군으로, 타 병과로 전군시켜서 타 병과로 바꿔서 그 병과에 맞게끔 우리가 운용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간호장교들이 그냥 간호 역할뿐만 아니라 전투·분석·행정·재정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역량을 사관학교에서 배우고요, 간호장교하면서 그 역량을 다 쌓습니다. 너네는 간

호장교밖에 못 해 이런 마인드가 우리 군의 발전을 저해하고요. 여군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27년까지 14.7%인가 여군의 캐파를 그 정도로 딱 한정해 버리니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30%로 늘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이게 10년이 5년 차 전역이 없으면 10년 사관학교 가지만 5년 안에 자기가 전역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저도 이 법에 반대합니다.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관학교를 6년으로 줄여요. 그래야 타당한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사관학교는 무슨 벼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능력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과거와는 달리. 이제 3사관학교 가거나 간호사관학교 가거나 여기 지원하는 분들의 능력이 또 탁월해요. 이제는 사관학교랑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은 꼭 제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운용하고 그러다가, 해보다가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법이라는 것은 한번 세팅되면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개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원을 줄일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고 정책의 영역에서 조금씩 풀어 갈 수 있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사려 깊게 봐 주십시오.

○박선원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서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조금……

○한기호 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을 왜 못 알아듣겠습니까? 다 이해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소위·중위 소대장급의 인원이 아주 절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이걸 누가 채우느냐 하면 ROTC가 채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ROTC로 들어온 분들 중에서도 장기 지원하는 분들이…… 지금 몇 대 몇 경쟁률이에요, 장기 지원해 가지고 선발되는 게, ROTC가?

○국방부차관 김선호 직군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 50% 미만 내에서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원한 사람 중에 50% 미만이 되는데, 그런데 3사관학교 출신을 전부 다, 지금 470명이다 그러면 다 장기로 해 주면 결국은 거기 장기 된 숫자만큼 ROTC는 또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우리는 뭐야 그리고 지원을 아예 안 한다는 거지요, ROTC를. 그러면 소대장급이 전체가 모자라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군 전체를 보고 하는 거지 개인의 한 사람을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군의 전체를 운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대위가 늘어나게 되면, 장기를 하게 되면 대위가 다 늘어나요. 그러면 소령 진급이 이제 안 돼, 소령은 어차피 시킬 숫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중위에서 대위 올라가는 것도 진급을 또 못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성일종 의원님이 낸 법안을 할 때도 국방부가 연구하는 걸 전제로 하고 보류시킨 것 아니에요?

지금 연구 과제를 KIDA에 줬습니까, 어쨌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제가 그 세부 진행까지는 체크 못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근거에 의해서 정책 검토가 되고 있고요. 다시 줘야 하면, 이게 의도는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장교 양성 과정의 틀을 바꾸는 문제고 그것은 군의 근간이 바뀌는 문제여서 선입법 후정책으로 가기에는 그 충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선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정책의 입법을 뒷받침하는 후입법 체계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심 갖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너무하시네들.

○**한기호 위원** 위원장님이 하도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의견을 얘기를 못 하잖아요.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장으로서, 국방부에서 진짜 이게 시뮬레이션도 돌려 보시고 정말 진짜 이게 우리 청년 장교들 그다음에 군을 직업으로서 선택해서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10년 의무복무기간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그다음에 5년 차 또 전역할 수 있는 선택권들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저는 정답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시대적 흐름 추세에 좀 따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심도 있게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저도 그러면 좀 추가……

○**한기호 위원** 과제를 KIDA에 줘야 돼요, 과제를.

○**박선원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3사관학교에서 단기를 장기로 바꿔 달라 할 때 제일 하소연하는 내용은 뭐냐면 단기에서 장기로 가는데 심사를 너무 일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가지고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느냐면 3사관학교 졸업생 중에서 일부러 제일 똑똑한 사람은 장기 안 해 준다, 단기로 해서 그냥 짤라 버린다 이런 말까지 해요. 아니, 그러니까 오해…… 아니지요. 그건 피해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고 한 위원님.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해소를 해 줘야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기를 장기로 갈 때 그 선택 권한을, 그러면 심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차관님?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것은 각 군에서 계급별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장기를 원하면 원하는 것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을 한 5%나 10% 거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단기로 묶어 놓고 원하는 사람만 몇 명만 장기로 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는 거예요.

○**한기호 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제일 먼저 장기를 누구를 뽑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필요하냐 이걸 먼저 결정합니다. 병과별로 보병은 몇 명, 포병은 몇 명, 인원이 결정돼서 장기 지원을 받은 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하는데, 거기서 심사하는 기준은 제가 육군본부에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직접 심사를 한 적도 있는데 자리를 전부 다, 경력을 쌓은 것, 표창받은 것, 학교 성적 이걸 다 놓고 그중에서, 물론 심사자료를 만들 때 서열을 만들어요. 개인별로 성적이나 모든 걸 종합한 걸 가지고 1번부터 속말로 100번까지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50명을 뽑는다 그러면 1번부터 50번 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뽑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자 있는 사람을 또 뽕니다. 빼고 밑에 있는 사람을 옮리고 이렇게 심사를 해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병과에 몇 명이 필요하냐 이게 첫 번째예요.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그 하자 있는 부분을 빼는 게 문제네요, 그러면.

○**임종득 위원**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한기호 위원** 그거 심의위원회들이 하는 거예요.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지 말고 5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50명여 명 뽑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기호 위원** 왜냐하면 심의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개인 자력표에다가 지휘관이 쓴 기술 내용에 개인 부채가 많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부채 때문에 근무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 빼고, 이런 걸 빼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놀음을, 놀음이 아니라 도박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걸 빼는 거예요, 그런 걸 하자 있는 사람을 빼서 다시 조정해 가지고 50명을 채우는 이런 역할을 심의위원들이 합니다.

○**박선원 위원** 한 위원님께서 그런 심사·심의까지 해 보셨으니까 그런 말씀 하실지 모르겠는데 3사관학교의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피해의식이나 뭔가 억눌려 가지고, 들어와서 국가를 위해 충성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소모당하다 벼림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한기호 위원** 제가 3사관학교에서도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박선원 위원** 그것 잘 아시니까 어떻게든지 치유책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제도 정비할 기간을 감안하여 부칙에 적용 시기를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면 대개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건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2년 동안 연구를 해서 어떤 식의 불만과 이것도 해소시켜 주고 지금 필요한 중·하위급 간부들의 부족분을 어떻게든지 채워서 우리 국방력 태세에 문제없도록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감안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건 거의 안 한다는 식이라는 말이에요. 일반 사람이 잘 쓰는 고려해 보겠다는 말밖에 아니다 이거예요.

○**한기호 위원** 이 문제를 국방부에다가 연구하라고 지금까지 수없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세요. 옛날에 3사관학교가 얼마가 목표였었냐면 15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000명으로 줄고 지금은 700으로 줄고 제가 교육사령관 할 때도 700이었어요. 그러다 지금 얼마로 줄었느냐? 지금 550입니다, 정원이. 550명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원하느냐? 지원하는 사람이 지금 450~470명 정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3사관학교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유인 요인이냐 그래서 장기로 해 주자 이게 이제 화두가 된 거예요. 옛날에 1000명 이상씩 뽑고 이렇게 할 때는 반도 장기가 안 돼도 군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3사만 그런 게 아니라 ROTC도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게. 그러면 육군사관학교는 어떠냐? 사관학교도 이제 지원자가 반 이상 줄었어요. 이게 전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만 놓고는 안 되고 다 해서 진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리가 다 된 것 같고요.

참고로 여기 13페이지 보면 3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장기복무 지원율은 93.7% 그리고 지원 대비 76.2%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통계치로 보면 한 몇 프로예요, 이거 한 17% 정도 되지요. 차이가, 갭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이게 참 차별이라니까요. 이게 비교 대상을 잘 고르셔야 돼요. 아니면 3군사관학교를 6년으로 줄여요. 제가 다음 법은 그렇게 빌의할게요. 그러면 그건 해 주실 거 아니야. 그건 전혀 문제없잖아요, 그 법은 그렇잖아요. 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

○한기호 위원 결리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뭐가 걸립니까?

○한기호 위원 3사관학교도 학사증을……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이게 계속 토론이 진행될 것 같은데 국방부에서는요 이것 심도 있게 조금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고는……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위원장님만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하게 하나를 여기서 딱 정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허영 위원 이것 결정하고 넘어가야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이거 다 하고인데, 71항부터 76항까지 다 한다고……

○허영 위원 다 하고?

○소위원장 부승찬 예. 6건이라고 그랬는데, 집중 좀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16쪽, 의사일정 제72항 한기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군인사법은 병과장이 유사 직위에 전직될 경우 전직 후 2년이 지나면 전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전직된 병과장의 임기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최근 병과장 및 전직된 병과장의 각 2년 임기 보장이 연속적으로 제한되어 전직된 병과장 직위를 공석으로 유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국방 운영 및 해당 직위의 공석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군과 공군은 병과장 전직 가능 직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므로 육군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 병과장은 역임한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을 전직 가능 직위에 임명하면 법 개정 없이도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님 의견도 공감하지만 저희들 일단 빌의해 주신 한기호 의원님 의견처럼 임기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만약에 좀 추가적인 것은, 이게 단순 임기 연장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인원들에 대한 명예전역과 관련된 수당 지급 문제 이런 것들이 동 법안에 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기 연장이 되면 저희가 제시하는, 전문위원님께서도 아마 그 의견을

제기한 것 같은데 명예전역과 관련된 것에 동의해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되는 사항은 같은 것들이 준용이 된다라는 이런 문구들을 같이 병기해서 임기 연장과 명예전역수당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동 법안에서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 국방부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법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전직된 병과장도 명예전역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있는 법 53조의2제2항에 지금 개정안 21조 제4항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한기호 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한기호 의원님 법안에 반대합니다, 저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이지만 감히 말씀드리면 이거 육군 9개 병과장에 한해서만 하는 법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한기호 위원** 제가 그래서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소위원장 부승찬** 설명 좀 해 주세요.

○**한기호 위원** 본래 병과장은 여기 육군 출신 우리 군에 오래 계신 분 다 아시지만 육군총장 명의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아니고 육군 규정이었어요. 육군 규정이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병과장들의, 속말로 법적인 보장 이걸 하겠다고 이걸 법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법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육군 규정으로 했을 때는 육군총장이 임의로 이걸 조정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보직이 돼서 바뀌어 버리면 거기에 관련돼서 조정해 주고 다 할 수 있었는데 법으로 만드니까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규정이나 훈령을 법으로 만들 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병과장은 육군총장이 하던 건데 법을 만들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걸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 특혜를 주겠다든가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의견 있으십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사실 해공군들은 이런 병과장 운영 이런 게 없어서 육군에 해당된다라는 현재 상태에서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병과장 개념으로 전직에 대한 이게 개정이 되면 사실 해공군들도 보면 지금 관련된 직위에서 병과 개념으로 해군도 한 13개 직위, 공군도 8개 직위의 병과 직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게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된다면 해공군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 식의 직위 연장을 통해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직위를 찾아낸다면 같이 공유될 수 있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의견 있으세요?

○**임종득 위원**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해공군과 관련된 부분도 방금 우리 차관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사하게 적용할 분야가 분명히 또 있고요. 이걸 함으로 해서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법을 만들어 놓고 해공군 아까 얘기하셨지만 지금까지 논의한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해공군 가능 직위를 찾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법이 어딨어요? 이거 법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아까 첨단과학사관학교니 뭐 이런 것도 다 그렇게 가야지, 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 논리로 반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9개 병과 직위에만 해당되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다음에 해군의 14개 병과 중 13개, 공군의 15개 병과 중 8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직 가능 직위를 어떻게 찾아요, 해공군은? 이것 그래서 9개 병과를 위한 특혜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한기호 위원** 아니, 이거 육군 규정을 법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도……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만일 공군도 그렇게 가고 있고 해군도 그렇게 가고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현재까지는 아니잖아요. 3군이 통일되게 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법을 발의하고 나중에 공군이나 해군도 찾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한기호 위원** 지금 현재도 해공군이 병과장을 이 법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차관님.

○**국방부차관 김선호** 병과장 직위로 하지만 저희들처럼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전직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거기는.

○**한기호 위원** 안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전직 가능 직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9개의 병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점들이 고려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심의를 좀 더 해보시고……

○**김병주 위원** 차관님, 근본적인 의문이 육군에 병과장이 꼭 필요한가요? 저는 군 생활 할 때도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꽤 많더라고요, 사실은. 특수병과들 보면 지휘 계통도 아닌데 병과장에 의해서 좌지우지 진급이 되는 것 같이 특수 일부 병과들은 되게 비리 같은 온상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지휘 체제도 문란하고. 전력을 추가한다든가 할 때 의견을 듣는 형식이기는 하지만 이게 육군에 꼭 필요한가에 대한 퀘스쳔 마크를 저는 늘 갖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가 병과장에 대한 것들은 병과장으로서 항상 그 위치에 대변해야 될 영역들이 제 경험에서는 있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변화는 있었다고 보지만 각 군, 육군 개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휘관들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병과장 차원에서 병과를 대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병과장이라는 그런 것들이 법규에 명기가 돼 있는 것 같고요. 병과장 자체에 대한 유무,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사실 저희는 돼 있지 않은데……

○**김병주 위원** 병과장이 있다 보니까 병과별로 점점…… 사실은 병과의 의미도 하다못해 육해공군의 전장 영역도 중첩되잖아요. 옛날에 공군이 했던 거 육군도 다 하는 거고 무인기 띄우면 되고 미사일은 공군보다 더 멀리 가는 거고 해군도 그렇고 서로 중첩이 되기 때문에 점점 육해공군도 이제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통합군으로 가야 되는 거고, 육

군 내에서도 병과장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병과끼리의 간격이 더 굳어져서 제병협동 지휘라든가 제병협동하는 데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와는 좀 관련이 없을지 몰라도 여기 나왔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저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과는 무관한 저의 의견입니다.

○**한기호 위원** 이걸 이렇게 우선 융통성을 풀어 줘야 되니까, 지금 병과장이라는 직위 때문에 사람을 보직을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풀어 줘야 되고 국방부가 이 법 자체를 폐기하는 걸 검토하세요, 제가 봐서는. 꼭 이걸 국방부 훈령이나 아니면 각 군 규정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본래 육군 규정에 있던 걸 갖다가 갑자기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돼요.

법무관리관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방부법무관리관 흥창식**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아까 김병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병과의 특수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병과가 소수 병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순환을 위해서도 좀 필요합니다. 병과장이 되면 2년을 하고 전직하지 않는 한 전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소수 병과에서 인력 순환을 원활하게 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법에 넣은 이유가 임기와 전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법률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군, 공군도 정해 놓고 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흥창식** 그거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육군은 병과장들이 대령 직위도 있지만 주로준장 직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 공군들은 병과장들이 주로 대령이기 때문에 대령으로 진급한 이후에 대령으로 거칠 수 있는 모든 보직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병과장을 하는 거고 육군 같은 경우에는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순간 2년 만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위보다도, 대령보다도 빨리 전역을 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국장님, 그건 잘못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병과장으로 가면 계급 정년이 남아 있어도 병과장 2년 하면 전역을 해요.

○**국방부법무관리관 흥창식**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해공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는 법으로 보장해 주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해공군도 같이 보장해 주는 걸로 가야지.

○**국방부법무관리관 흥창식** 그 말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삼군이 균형되게 가야지 지금 현재로는 차별 법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과연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냐 이거지.

○**한기호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걸 안 해 주면, 여기 19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육군 군사경찰실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거 죽 써 놓은 걸 보시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병과장 때문에 보직을 못 주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법률 때문에. 그래서 이걸 풀어 줘야지만 된다는 거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걸 법으로 했기 때문에 법으로 푸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해공군이 적용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결정하세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정책적 검토를 통해서……

○**한기호 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병과장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해 주고.

이건 해 줘야 돼, 지금. 문제가 생기거든.

○**소위원장 부승찬**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이게 군에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병과장 2년 보직이라는 것 때문에 전출 가고 이러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위원장 부승찬** 환경 자체는 이해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한기호 위원** 현재 법 때문에 보직을 못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지금.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해공군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런데 전직 가능 직위가 없어요, 해공군은.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두 분 견해가 대체로, 두 분이 서로 이해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해공군 분야도 추가해서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하시지요, 위원장님.

○**한기호 위원** 좋습니다.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기왕에 해공군으로……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이거는……

○**박선원 위원** 이건 해공군은 전혀 듣 볼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그게 아니라……

○**한기호 위원** 해공군은 전직을 할 수가 없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해공군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박선원 위원** 법으로 만들어 놔도 해공군은 어차피 혜택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 이게 9개 직위에만 특혜를 주는 거지요.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융통성 있게 가시지요.

○**한기호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육군 같으면 방공, 화학, 탄약, 수송 이런 거는 사실 그러고서 전직을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양쪽이 다 문제가 생겨, 양쪽이 다. 차라리 이 법을 폐기하면 다 해소돼요.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다음……

○**김병주 위원** 잠깐만요. 한기호 위원님 말씀이…… 국방차관님, 지금 당장 문제가 되나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보직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제약이 돼서 보직 운영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기호 위원님의 그걸 사실 알고 법안 마련한 건데 조금 시간 주시면 저희가 해공군도 과연 이와 같은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파악했을 때는 해공군은 아마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대령직위이고 대령직위는 병과장이 됐다고 해서 육군처럼 바로 2년 만에 전역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대령직위 순환 보직에서 마지막 그 직위를 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좀 제한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해공군에 대한 문제를 위원장

님이 제기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내일 또다시 법안소위가 있으니까요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 만약에 저희가 해공군은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법안을 좀 해 주시면……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해공군 입장도 하고요.

○**김병주 위원** 차관님, 여기 병과 직위 한번 보세요. 보면 앞으로 이거 법을 없애고 병과장도 없애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공병은 왜 병과장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전투 병과니까 공병은 사실 사단장도 내보내고 필요한 군단장도 내보내야 되는 거고. 여기 보면 병기나 수송 같은 데는 솔직한 얘기로 잘 훈련이 되면 군수참모부장이나 할 수 있잖아요, 진급시켜서 솔직히. 안 시키니까 거기에 한계가 되는 거지요.

인사 직능이 있나요? 인사병과장이?

○**한기호 위원** 인사 병과 있습니다. 부관하고 옛날 인사 운영 감시 근무하던 사람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사도 밑에는 통합되고 있잖아요, 군수부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도 인사참모부장이나 이거 한 사람들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법무라든가 의무 같은 데는 다른 데 전환이 좀 어려울 텐데 이것을 좀 흐트려 놓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유리천장을 만들어 놓지 말고 실제. 솔직히 군사경찰은 요새는 특임단이 있어 가지고 잘만 훈련하면 이런 친구들 특임단이 주력이잖아요. 그러면 특전사령관도 내보낼 수 있지, 진급해서. 그래서 실제 유리천장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특임단이 요새는 군사경찰에서 주력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병과장은 내니까 군사경찰 맨날 수사만 하려고 그리고 주력인 특임단 훈련은 안 하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한기호 위원** 지금 김병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이 법이 잘못 태동된 거예요. 왜냐하면 육군의 규정을 갖다가 법으로 그냥 몇 단계 뛰어넘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융통성을 충분히 군에 보장해 주려면 이 법을 없애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일곱 분이 합의한다면 제가 법을 다시 발의해서 병과장 제도를 없애는 거지요, 이 법을.

○**김병주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게 시대의 조류에 맞을 겁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국방부하고 다시 논의해 가지고, 그러면 육해공군의 형평성이니 뭐니 다 문제가 해소되고.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 위원님, 정답을 알고 계시면서 왜……

○**한기호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법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예, 알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22쪽 의사일정 제73항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기존 병에 한정된 재정지원 대상을 현역 군인 전체로 확대하여 국가와 협약을 맺은 기관의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26일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 즉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에 초급간부를 포함하자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소위 위원 및 관계부처의 반대의견으로 인해 계류된바 관계부처 및 국회 차원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 구체적인 시행 방식 및 예산 조달 방식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도 이게 지난번에 됐던 것은 간부들은 단기복무장려수당 이런 것들로 이것을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준비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중복적 지급이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견들이 있어서 좀 소외가 됐는데 현재 사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병주 위원** 이건 초급간부는 해 주는 방향으로 하시지요. 왜냐하면 수당 같은 걸로 보상한다 하지만 내일준비적금은 적금의 형태이고 거기에 이자를 좀 더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초급간부들이 예를 들어서 병사와 똑같이 18개월을 한다든가 20개월을 한다든가 거기에 한정해서 병사와 똑같이 해서 목돈을 본인들이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 기간을 하려고 하지 말고 병사 기간과 동일한 정도로 해 주면 한 2년 하잖아요. 그러면 목돈 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모을 수가 있겠지요.

○**임종득 위원** 저도 방금 김병주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부처 간의 이견을 극복하는 게 좀 문제일 것 같아요.

○**한기호 위원** 오늘 여기 기재부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한기호 위원** 아니, 이거는 기재부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임종득 위원** 들어야 돼요. 우리끼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기호 위원** 우리끼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지난번에는 기재부가 왔었잖아요, 11월 달에.

○**소위원장 부승찬** 그런데 오늘 기재부가 왜 안 왔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기재부는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는 취지하고 다 동의하지만 재원 확보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저희가 기재부하고 좀 더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건 기재부 동의 없이는 못 가요.

○**소위원장 부승찬** 예, 그렇지요.

○**박선원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상황 논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미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을 우리 초급간부들이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군의 사기가 원래 낮았지만 더 낮아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동의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 소위에서는 통과를 시켜 놓고 기재부하고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기호 위원** 지난 11월 달에 할 때 그 당시에 보류를 시켰잖아요.

○**박선원 위원** 아니, 그때 내란 할 줄 몰랐지요. 지금 부사관들이 해당……

○한기호 위원 아니, 우리가 하자고 했는데 기재부가 반대해서 보류시켰는데……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요.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그래요. 그때 발의한 분은 딴 분이 발의하고 이번 건 안규백 의원 건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지.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그 의원님 존함도 여기다 다시 올리시지요. 같이해서 해요.

○한기호 위원 그러면 두 분 걸 병합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는……

뒤에 실무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보건복지관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11월에 발의하셨을 때는 황희 의원님께서 초급간부에 대해서 병에게 똑같이 줬던 적금을 월 55만 원 해서 1년 6개월 기간으로 해서 상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안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때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이제도 자체가 지금 단기복무장려금 제도하고 상당히 많이 겹치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복무장려금은 단기 장교한테만 주고 이 적금 상품의 경우에는 그 단기 장교의 경우에는, 단기복무장려금도 받고 예를 들면 ROTC나 이런 경우에는 또 적금도 받고 이런 이중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점을 제기하셨었고요.

그래서 그때 기재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단기복무장려금 제도 또 부사관한테 주는 단기복무 제도 이거를 먼저 설계를 해라, 그런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지금 만약에 황희 의원님 의견대로 반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20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금 중복 수혜가 되지 않는 방면으로 제도 설계하고 단기복무장려금 제도하고 또 다시 한번 제도 점검을 해서 협의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방부에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예산 당국하고도 최대한 많이 협의해서 다시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여기 23쪽에 보시면 그 당시에 박선원 위원님도 수당 올라간 거와 관련해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초급간부라고 했을 때 초급간부도 사관학교, 학사, ROTC, 3사, 다양한 초급간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법무장교 의무장교 이거 다 초급간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뚱뚱그려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디 누구까지 할 거냐 이랬을 때. 그래서 이거는 다시 기재부하고 국방부하고 연구를 해서 안을 만들지 않고 그냥 이걸 법을 갈 수가 없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지금 국방부에서 안을 마련하고 있다니까요 좀 기다려 봤다가……

○김병주 위원 잠깐만요. 내일준비적금이 이자만 올리나요? 또 나중에 병사들은 더 많이 주잖아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지금 내일준비적금 같은 경우에는 병의 경우에는 월 55만 원을 최대한도로 본인이 내면 정부가 100% 매칭으로 55만 원을 더해 주고요. 전역을 할 때 이자율 5%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최초 내일준비적금, 그때 21대 때 제가 이거 발의해서 이자를

했는데 그러면 병사하고 똑같이 하기보다는 간부들은 이자에 대한 적금만이라도 해 주면 되지요, 이자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해서 얼마 보상하라가 아니라, 보상하라는 것은 단기 자원들 수당하고 또 겹치니까 그렇고 이자만이라도 병사가 하는 내일준비적금 이자로 병사들 하는 18개월이든 해 주면, 요새 사실 초급간부들 목돈 마련을 하는 그런 재미, 목돈 마련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 주면 초급간부들이 훨씬 낫지요. 그런 식으로 한번, 오늘은 그렇더라도 좀 연구를 해 보고 그 정도는 기재부에서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자 올려주는 데 몇십억밖에 안 들었어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외람되지만 이자만이라면 사실 간부의 경우에는 지금 군인 공제회에서 본인이 낸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5% 이상 복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부가 또다시 이자를 준다는 것은 조금 무의미한 것 같은데……

○**김병주 위원** 그래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다시 한번 협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26쪽입니다.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군인의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격취득 등 지원대상으로 자기개발활동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군인의 자기개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등을 극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여 군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그 시행령은 공무원의 자기개발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승진임용에 필수적인 교육훈련시간에 자기개발 학습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는 승진요건과 연계된 자기개발 학습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기개발 지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이 순수한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 등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 및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일반직 공무원과 유사하게 자기개발을 승진요건에 반영한다면 오히려 군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좀 신중 검토인데, 부연해서 두 가지 명확하게 하면 이게 군인과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자기개발이라는 것이 승진의 요건으로서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보장해 주는 것인데 군인들은 사실은 자기개발한 것이 진급의 요건으로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고요.

또 군복무라는 것에서는 또 간부하고 병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병사의 자기개발 또 간부의 자기개발 이 영역이 구분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군인은 기본적으로 간부가, 우선 병사들은 의무복무이기 때문에 간부를 보면 양성교육하고 보수교육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자격을 얻을 때 부사관이나 장교가 되기 위해서 양성교육 과정을 거치지요, 사관학교든 후보생 과정이든. 거친 이후에 임관한 이후에는 보수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보수교육도 정기보수교육이 있고 수시보수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도가 있어서 정기보수교육 자체는 OBC, OAC, 육군대학교, 국방대학원 이렇게 쭉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자기가 교육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위탁교육을 시켜 주는 경우에 해외에도 나갈 수 있고 국내 석박사 과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군에서 필요로 한 위탁교육, 자기개발이라는 것은 군에서는 정기보수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진짜 자기개발을 위해서는 위탁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넣는 거는 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께서 정부 측 입장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32쪽, 허영 의원 대표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기존의 여성 단기복무 장교뿐만 아니라 남성 단기복무 장교·부사관까지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혼행 첫째 자녀의 경우 1년에 한정했던 것을 전체 육아휴직 기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군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최근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첫째·둘째 이상 자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도록 변경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가 남성 단기복무 장교를 육아휴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 혼행법에 대해 합헌 결정하였는바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 정서, 제도 실시에 따른 국방력 부담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는 전적으로 허영 의원님이 제시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임종득 위원** 좋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단기복무자라고 했기 때문에.

자, 단기복무자를 보세요. 결혼을 해 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내가 군대 생활을, 부사관은 4년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3년 차에 아기를 낳았어, 4년 이제 들어가는 해에. 그러면 육아휴직을 가면 그걸로 군대 생활이 끝나버려요. 휴직 중에 군대 생활이 끝난다는 거지.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그게 아니고 복무기간이 일단은 끝나고 나면 그 나머지 복무기간은 하는 겁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를 복무를 하는데 문제는 육군 정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보고서 이거를 그냥 할 수 있나 이런, 장교도 마찬가지예요. ROTC다 이거야. ROTC가 26개월을 해요. 그런데 대학교 때 결혼해 가지고 ROTC를 왔어. 와 가지고 소위 달았어. 중위가 됐는데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동기생들은 다 전역하잖아. 그러면 나는 육아휴직 갔다 와서 동기생 다 전역한 다음에 다시 군생활 하나? 이렇게 이런 경우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겠나,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건 우리 국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필요해. 그런데 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지금 현재 혹시 국방부에서 단기복무 간부들 육아휴직, 출산 이런 것들이 통계 같은 게 있나요,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입니다.

지금 25년 1월 기준으로 한 2000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직에는 다른 휴직도 있는데 질병휴직도 있고……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단기복무.

○**한기호 위원** 단기복무자는 지금 현재는 없어요.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지금 장기복무자로 한 거는 한 2000명 정도가 휴직이 돼 있고.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출산. 단기복무자가 결혼 후 출산 이런 것 통계가 있나 이거지요.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예, 그거는 별도로 이번 법안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한 500명 정도가, 여군은 지금도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남군만 지금 육아휴직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이 남군도 동일하게 양성평등과 그다음에 육아휴직 여건, 국가적인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지금 단기복무자 중에서 500명이, 자녀가 있는 인원이 있는데 절대 그 인원이 전부 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지는 않고 지금 조금 일찍 출산을 한 간부는 한 500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위원** 위원장님, 일단 남성이 신청하는 경우는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전역의 시점들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부승찬** 또 여군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군은 하고 있는데.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은 남녀가 공히 똑같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기복무자 남자들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ROTC 26개월이야. 그런데 와서 아기를 낳아서 육아를 해야 되는데 이때가 전역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들도 6개월 이내에는 육아휴직을 안 보내 줍니다, 공무원도. 우리 직원이 아기를 낳아서 제가 했는데 안 해 줘. 그런데 6개월 이상 나오면 해 줘. 그러면 해 주는데 하면 전역이 되는 거야. 그러면 휴가 간 날짜를 다시 복귀해서 군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동기는 다 나간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그런데 그럴 경우는 거의 육아휴직 안 나가고 전역을 하겠지요. 그

렇지 않을까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런데 지금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에 미치는 영향들을 저희들이 고려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수치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정도로 인해서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 차원에서 또 우리 군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여기다 하나 토를 달아요. 단기복무자가 출산한 경우 장기복무지원 시 가산점을 준다. 그게 오히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종득 위원** 그러면 많이 넣겠네.

○**한기호 위원** 지금 저한테 아기 둘만 넣으면 장기로 해 주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이 들어와 있어요. 둘만 넣으면 장기로 해 준다.

○**박선원 위원** 아이 많이 낳고 장기도 보장되고.

○**한기호 위원** 그런데 그 짧은, 짧었을 때 둘 낳기는 어렵고. 그런데 여기도 충분히 그건 할 수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이건 동의 안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허영 위원** 우선은 통과시키고 그런 추가적인 인센티브나 제도적인 보완들은 하시지요.

○**박선원 위원** 일부개정 또 하고.

○**소위원장 부승찬** 예.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의사일정 76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전·평시를 불문하고 군복무 중 국가를 위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을 대상으로 특별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가 되겠습니다.

전사·순직이 아닌 상황에서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어 진급된 경우는 해군에서 2건 6명이 전부인 점, 군인의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군인의 특별진급 판단 기준을 현행 법령처럼 추상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경찰 등과 같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특별진급이 임명권자의 재량으로 남발될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 우리 군에서 특별진급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두 번에 6명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누구누구? 마지막 한 게 황진하 소령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가장 최근에 한 게 2012년도 북한 장사정 미사일포 추적 관련된

부사관이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연평해전 관련된 인원들이 5명 있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요? 현재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법이 없을 때도?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이 살짝 기준을 낮춘 거지요, 현행하고 비교해 보면. 41페이지 30조 2항을 보시면 기준을 좀 낮춘 걸로 봐야 되는 거지요.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걸 하나의 권장 조항으로 봐야 돼요. 권장 조항으로 봐야 되는데……

○허영 위원 지금은 전투,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를 위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사실상……

○소위원장 부승찬 사례가 없을 수밖에 없게끔……

○박선원 위원 북한 장거리 미사일은 전시 아니잖아요.

○한기호 위원 그런데 군인으로서 지금 시키는 것이…… 이것 꼭 법을 만들어야 되나?

○임종득 위원 핵심이 뚜렷하게 공적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허영 위원 지금 국방부 의견이 국방부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인데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은 이것을 경찰 등과 같이 명확하게 상세히 규정해서 특별진급이 임명권자의 재량으로 남발될 가능성 그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동의하는 것이지 이 개정안에 동의하자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위원님, 이게 지금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도 대통령령이고 군인사법 시행령도 대통령령이고요. 법은 통과시키되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요건을 규정하자 거기에 동의한 겁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3사단에 온하게끔 사건이 생겼을 때 훈장 심사위원을 했었는데 우리가 훈장, 군인들이 받는 훈장은 뭐라고 나오냐면 딱 전제조건이 목숨을 걸었다는 것, ‘죽음의 위험도 감수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사람은 무공훈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전제조건이 그렇게 붙어서.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연평해전에서 작전하고 이것 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북한 장거리 미사일 추적 유공자로 시켰단 말이에요. 1·2항이 있는데 2항에서 이 경우는 사실은 미사일 추적 유공이지 무공은 아니거든.

○박선원 위원 아니, 북한에 가서 발사장치 옆에서 감시하고 온 정보사 요원이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한기호 위원 그래서 법을 만들어도 좋은데, 국방부가 동의하면 뭐……

○소위원장 부승찬 국방부가 지금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는 걸로……

○박선원 위원 어쨌든 군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작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자긍심을 주는 건 필요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국방부가 남발할 일은 없고.

○국방부차관 김선호 추가보고드리면 연평해전 같은 경우는 전투 요건이 되는데 미사일 추적도 아마, 제가 보고한 바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국가의 비상사태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에 보면 전투,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 1계급을 특진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봐서 된 것 같고.

지금 김성원 의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걸 다 망라하고 평시에 어떤 작전했을 때도 이에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법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77·78항도 같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및 제78항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잠깐 쉬었다 안 합니까, 딱 2시간이 지났는데?

○**소위원장 부승찬** 5시까지 하고 그냥 끝내시지요.

○**한기호 위원** 그러면 내일 할 게 너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박선원 위원** 내일은 계엄 해야 되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계엄도 있고요. 다시 한번 심의를……

○**김병주 위원** 군인사법까지만 하고, 방망이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78항까지만 하고 끝내는 걸로, 내일 할 게 없으니까.

○**김병주 위원** 내일 할 게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소위원장 부승찬** 내일 할 것 많아요.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의사일정 77항·78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민홍철 의원 및 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교 등 군 간부의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현행법 규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이를 일정 기간, 예컨대 민홍철 의원안은 10년, 주호영 의원안은 15년이 경과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호영 의원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를 15년간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에 추가하고 또 마약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장교 등의 임용결격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임용결격사유 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내려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임용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형사미성년자 외에 장교·부사관 임용 최고연령 29세임을 감안할 때 민홍철 의원안의 10년 정도로 규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마약류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고 미성년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마약범죄 중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임용결격사유로 지정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는 않는지, 군인 이외의 공무원 경찰 소방 등 타 직역 공무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아직 임용결격사유 및 제적사유로 규정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들 원래는 원천적인 임용이 제한되는 것에 했는데 그것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한다면 사실은 최저연령하고 최고연령 비교했을 때 15년

을 하게 되면 아무도 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또 위반이 될 테니까 10년 의견을 주신 민홍철 의원안을 수용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마약류와 관련돼서는?

○**한기호 위원** 아니, 여기 써 있기로는 경찰이나 다른 데는, 소방공무원은 이 적용을 안 받는데 군인만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냐 이렇게 국방부가 뜻을 냈는데…… 지금 저걸 물어봐야 돼. 신병들 마약 검사하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입영되는 인원들.

○**한기호 위원** 얼마나 나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아직은, 올해 시행이 됐는데 지금 국장의 얘기로는 한 5% 정도, 시행한 것이 5% 정도라고……

○**한기호 위원** 많네.

○**소위원장 부승찬** 저희가 국정감사 현장시찰 갔을 때, 현장점검 갔을 때 거의 안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몇만 명당 한 명 이렇게. 5%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통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저희가 병무청에서 간이검사키트로 할 때는 사실은 조금 잘못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 다시 재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검하면 확률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일단 8종이나 6종의 키트를 할 때는 오진율이 좀 많이 나와서 저희가 2차를 다시 합니다, 확진검사를. 처음 나올 때는, 올해가 처음 시행하는 시기라서 그런지 약간 오류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5%는 2차까지는 끝낸 거예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아닙니다. 저희가 병무청에서는 1차만 하고요. 2차 확진검사를 하게 될 때는 지역의 의료전문기관으로 저희가 다시 이송을 해서 확진검사를 다시 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 확진검사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어느 정도 되냐고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그것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한 1%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한기호 위원** 저는 민홍철 의원님 안 1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2번 마약류에 관련돼서는 마약류가 한 번 끊었다고 확실하게 끊은 게 아니기 때문에 습관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재를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안 해도 군인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위원님들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기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위원장님, 아까 마약류 관련된 건 주호영 의원은 15년인데 성범죄가 10년으로……

○**소위원장 부승찬** 성범죄는 10년이고요.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마약류도 10년……

○한기호 위원 10년으로 하면 돼요.

○소위원장 부승찬 예.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부터 제78항까지 4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해 정리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그 외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안건 중 심사를 하지 못한 안건은 내일 오전 먼저 심사하고 내일 예정된 안건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윤상현 임종득 한기호 허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전문위원 류승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차관 김선호

법무관리관 홍창식

기획관리관 김경욱

계획예산관 신태복

국제정책관 이승범

인사기획관 오영대

보건복지관 김은성

군수관리관 이갑수

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규제개혁법제담당관 강정화

합동참모본부

제2작전처장 윤성원